

입법평가 연구 09-16-□□

#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이 종 한

#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 A Case Study on the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Burdens Using the SCM

연구자 :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Lee, Jong-Han

2009. 7. 31.

## 국문 요약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해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들이 표준비용모형의 기본적인 산식(수량변수 x 비용변수)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추정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면에는 표준비용모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행정부담의 추정방법인 표준적 효율기업의 통계적 유의성 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표준비용모형 자체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각국의 정의,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단위의 구분 등의 차이점과 데이터 검증방식의 임의성 등으로 인해 결과의 표준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문화를 고려할 때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행정부담을 측정할 경우 측정대상이나 규제와 정보의무의 구분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국제적 비교가 어렵다든지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영국의 조세분야의 행정부담 측정사례와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에 따른 행정부담을 측정하였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총 32개 조세영역 중 정보의무를 측정할 수 있는 28개의 조세영역에 대해 279개의 서식과 2,692개의 정보의무, 6,614개의 자료요구를 확인하여 총 5,100백만 £의 행정부담 비용을 추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례로서는 2009년 7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부담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전국 1,480개 대기업들의 총 행정부담비용은 128,851,834원으로, 전국 1,532개 중소기업들의 총 행정부담은 794,376,577.24원으로 도출되었고, 따라서 전체 모집단 3,012개 기업의 총 행정부담은 923,228,411.24

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기업의 행정부담이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측정결과를 활용한 행정부담 감축 전략 수립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정보의무와 자료요구를 식별해 내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들였으며, 체계화된 식별작업의 필요성이 공감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체계와 규제를 벤치마킹하여 국가간 행정부담 비교를 통하여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적절한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키워드 : 표준비용모형, 행정부담, 유해화학물질

## Abstract

Even some countries like England, Germany, Netherlands have measured their administrative burdens due to regulations using standard cost model, the detailed process of its estimation is not clearly demonstrated. We can easily find some weak points of the standard cost model as principal reason of this ambiguity.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normally efficient firm, different notions of the regulation according to countries, differences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information obligation and the data requirement, and arbitrary test of data reliability make the standard cost model problematic. In this regards, we have to prepare more perfectly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st model to measure administrative burdens. If we go to measure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and pilot test, the confidence and the comparability of the measurement results could not be assured.

This report examines England's measurement exercise of administrative burdens in taxation area and measures Korean administrative burdens due to hazardous chemicals release report regulation. In the study of English case, 28 measured areas out of 32 total tax areas revealed 279 forms, 2,692 information obligations, and 6,614 data requirements. These administrative burdens amounted to 5,100 million £.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conducted in July 2009, 1,480 large enterprises's administrative burdens amounted to 128 million Won and 1,532 small enterprises' 794 million Won. Such results confirmed like England's case that small firm's burdens are more onerous than large firm and it has to be considered when government plans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olicy.

In both country studies, identification of the information obligation and the data requirement demanded much efforts. It is recognized that system-

atic identification efforts are necessary. The future studies need to focus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gulatory systems and its administrative burdens to plan appropriate AB reduction policy.

※ Key Words : Standard Cost Model, Administrative Burdens, Hazardous Chemicals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영국의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	9
제 1 절 개 관 .....	9
제 2 절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	11
I. 준비단계(0 단계) : 착수 .....	11
II. 단계1 : 예비분석 .....	13
III. 단계2 : 시간과 비용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 .....	27
IV. 단계3: 계산, 데이터 제출, 보고서 .....	30
V. 행정부담측정결과의 요약 .....	30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	37
제 1 절 측정의 기본가정 .....	37
I.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SCM 기본 개념 및 가정 .....	37
II. 측정대상 기업 .....	44
III. 비용변수 .....	47
IV. 기타 측정과 관련된 가정 .....	51
제 2 절 단계별 측정 내용 .....	56
I. 1단계 : 규제목록,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	57
II. 2단계 : 비용변수확인 - 수량변수의 도출 .....	77
III. 3단계 : 조사준비 .....	80

IV. 4단계 : 조사실시 .....	82
V. 5단계 : 자료검증 및 표준화 .....	82
VI. 6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	96

제 3 장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한 영국과 한국의 행정부담비용 측정사례 비교 및 시사점 .....	99
I. 정보의무, 자료요구 및 행정활동 파악 .....	99
II. 비용변수 확인단계 비교 .....	102
III. 시사점 .....	103

#### 【부 록】

[부록 1] 유럽표준비용모형측정현황(2005.7) .....	109
[부록 2] 규제카드 .....	111
[부록 3] 규제별 정보의무내용의 확인 .....	119
[부록 4] 자료요구의 확인: 정보의무 보기카드 .....	143
[부록 5] 화학물질배출량 조사표 .....	157
[부록 6] 업종별 조사사업장 현황 .....	161
[부록 7]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설문조사표 .....	163

## 제 1 장 영국의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 제 1 절 개 관

- 영국의 조세분야의 행정부담을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한 추정은 HMRC(HM Revenue & Customs)와 KPMG의 두 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 KPMG는 영국 기업의 조세행정부담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BRE (Better Regulation Executive)의 ‘행정비용의 측정: 영국의 표준비용모형(2005. 9. 30)’<sup>1)</sup> 매뉴얼을 적용함
- 이 프로젝트는 200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진행. 이 때 각 단계들은 앞 단계가 끝난 후 연속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들이 동시에 추진되었음

&lt;그림 1&gt; 영국 HMRC 행정부담 측정 진행 계획



※ 자료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Annex A, p.4

1) 원제 -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UK Standard Cost Model

□ 측정단계

- 0 단계 - 착수
- 1 단계 - 예비분석
- 2 단계 - 시간과 비용 데이터의 확보와 표준화
- 3 단계 - 계산, 데이터 제출, 보고서 작성

□ 프로젝트에 적용된 모형은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위한 일관된 일련의 추정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모형 자체가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나 쟁점과 관련하여 진단적 도구로서 유의미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가장 부담이 큰 영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기업체들의 행정부담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근원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 행정부담과 증가된 세입의 비율은 각 세금마다 어떻게 다른가?
- 우리는 새로운 조세 규제가 갖고 있는 유사한 행정부담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적절히 설명되는가?
- 기업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초점을 맞추어 변화시켜야 하는 운영상의 분야는 어디인가?
- 기업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활동을 독려하고, 홍보하고, 용이하게 해줘야 하는가?

□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조세 규제에 의한 행정적 요구사항들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만을 그 적용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본 모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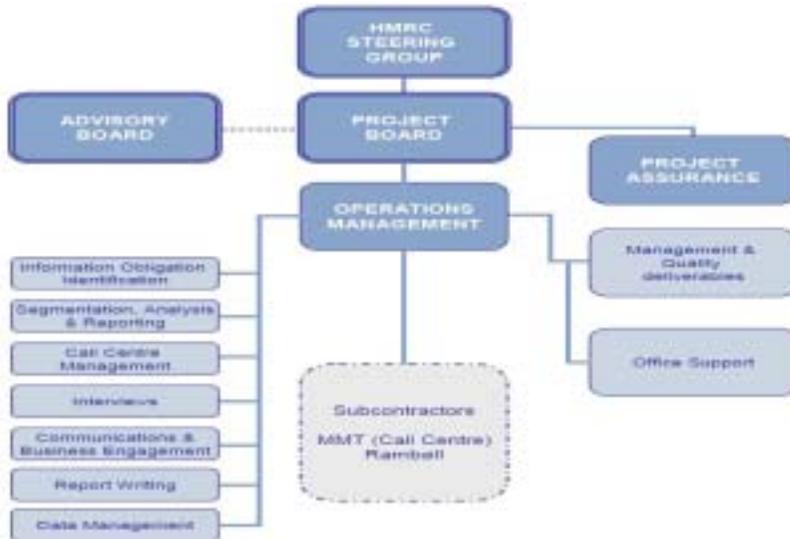
- 규제나 기업의 모델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체들의 비용
- 불확실성의 비용
- 기획 및 계산 등의 비용

## 제 2 절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 I. 준비단계(0 단계) : 착수

- 준비단계에서는 이후 측정 단계를 위한 기초를 수립함
  - 준비단계는 측정단계별 계획 수립, 측정관련 소관부처, 측정기관, 소관부처, 조정부서들에 대한 교육훈련, 측정의 품질보장 과정 마련, 측정단계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 유지, 공유할 수 있는 수단마련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
  - 준비단계에서 선정된 규제가 표준비용분석의 대상 범주에 포함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포함시킨 다음, 다른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결정했는지 비교해서 일관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2> 영국 HMRC 행정부담 측정 참여 조직 구성도



※ 자료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Annex A, p.44

## 1. 측정 관련 참여진

- HMRC와 KPMG가 조세행정부담비용을 측정하려고 하던 때까지만 해도, 영국과 같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가진 국가에서 표준비용모형이 적용된 전례가 없었음.<sup>2)</sup> 따라서 KPMG는 비슷한 측정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그 경험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 KPMG는 덴마크와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본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덴마크의 Rambøll Management사와 파트너십을 맺음
- 프로젝트 수행 관련 조직은 위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만들어졌음
- 프로젝트 위원회는 HMRC와 KPMG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HMRC의 의사결정 그룹(Steering Group)에 프로젝트 관련 내용들을 보고했고, (기업)대표단체들의 구성원들과 기업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피드백과 조언을 들음

## 2. 기반시설과 자원 동원

- 참여 조직이 결정된 후 프로젝트의 기반시설을 세팅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
- 여기에는 프로젝트 사무실과 같은 물리적 기반시설 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팀의 구성 및 관리절차 구축, 필요한 업무 협조와 자료 획득을 위해 내각 사무처(Cabinet Office)와의 관계 구축과

---

2) Differences in Application of the SCM(2005. 7)에 따르면 당시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해 행정부담을 측정한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조세분야에 대해 표준비용모형을 통한 추정을 완수한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뿐이었음(부록1)

같은 추상적 자원이 포함됨

### 3. 정보 접근, 공유, 유지를 위한 IT기술의 개발

- IT 인프라구조는 크고 복잡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고, 공유하고, 조작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 프로젝트 스태프들이 KPMG의 인트라넷, 이메일,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웹기반 정보관리 도구, 덴마크 어로 된 Ramvab의 프레임워크와 지원도구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 등이 IT 인프라구조 구축에서 이루어진 주요 활동이었음

## II. 단계1 : 예비분석

- 예비분석은 표준비용분석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데, 이는 실제 데이터 수집에 앞서 관련 법령에서 기업관련 정보의무와 자료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정보의무와 자료요구가 확인되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들을 16개의 표준행정활동에 근거하여 파악하며, 그 다음으로 관련 배경 변수들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분류를 파악함
- 이 과정은 정보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의 식별 및 분류, 관련규제의 확인 및 구분, 기업분류의 파악, 모집단·시간당 임금률과 빈도의 파악, 기업인터뷰와 전문가 평가, 비용변수의 확인, 인터뷰 가이드 작성, 검토의 8개 세부단계로 나누어짐

### 1. Step 1: 정보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의 식별 및 분류

- 효과적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조세 규제가 SCM 방법론에 일치하도록 조세규제를 명확하고 일치된 방법에 의해 정보

의무와 자료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를 구분할 정확한 구분기준이 없어 팀별로 정보의무를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KPMG는 정보의무(Information Obligation)의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정의함으로써 조세 규제에서 정보의무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음
- KPMG는 HMRC가 제공한 영국 조세 규제 데이터베이스에 Ramvab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정보의무를 분류한 후, 나머지 규제 가운데 HMRC가 확인시켜준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요구 및 기타 영역을 확인

#### (1) 정보의무와 자료요구의 분석

- 정보의무와 자료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된 60명의 조세 전문가들은 분석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간 표준비용모형, 특히 규제를 정보의무와 자료요구로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 코스를 밟았음
- 영국의 조세규제 분석은 200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던 규제는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분석하고 모델화하였으나, 당시 제정은 되었으나 시행 전인 규제의 경우 정보의무만을 분석하고 가격과 수량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음

#### (2) 규제에 따른 정보의무의 식별

- 정보의무 중에는 하나의 규제에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여러 규제에 동시에 연결되어있는 것도 있음. 여러 규제에 동시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관련영역을 설명하고 정보의무는 하나의 규제에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됨
- 이는 여러 규제에 동시에 연결되어있는 정보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정보의무는 한 번만 측정해야 하기 때문임. 단, HMRC사용

자가 정보의무와 규제의 모든 연결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63개의 규제, 299개의 정보의무가 존재함. 이 때 관련 조세영역으로 관세, 무역통계공유(Intrastat)<sup>3)</sup>, EC 세일즈리스트, 소비세, IPT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EC 세일즈 리스트에서도 관련 조세영역으로 무역통계공유,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를 제시함

### (3) 규제 출처에 따른 정보의무 분류

- KPMG는 각 정보의무를 규제의 출처에 따라 origin A, origin B, origin C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자료의 프레임워크에 입력하였음
  - origin A은 EU규범이나 다른 국제적 의무에 의한 자료요구
  - origin B는 EU규범이나 다른 국제적 의무에 의하나 실행은 회원국에 달려있는 자료요구
  - origin C는 국내규범에 의한 자료요구

- 영국은 origin C에서 명령이나 지도와 같은 ‘비입법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앞서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한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다른 태도임

- 이러한 EU나 다른 국제적 의무에 크게 영향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영역의 경우 영국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구조화되고 적용됨. 규정의 해석에는 주관적 요소가 있고 이는

---

3) Intrastat is the system for collecting statistics on the trade in goods between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EU). It began operation on 1 January 1993, when it replaced customs declarations as the source of trade statistics within the EU. The requirements of Intrastat are similar in all member states of the EU.(by Wikidipia)

정보의무 수준에서 분석됨

- 부가세는 근본적으로 EU 입법에 기원을 두고 있음. EU 입법은 영국의 기업에 직접 적용되거나 영국법에 interpret되거나 적용됨. 부가세에서 의무의 대부분은 origin B에 해당하며, origin A와 origin B는 모두 EU입법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 origin A의 자료요구는 EU입법에서 설정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음. 반면, origin C의 경우는 EU입법에 의한 규율을 제한하는 영국의 국내법, 명령, 허가 와 다른 (행정)지도와 연관됨
- 관세는 EU와 영국 규제의 결합(combination)에 의함. EU는 관세동맹으로 EU입법은 영국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며 영국의 규제는 EU입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규율됨. 관세의 경우 origin A는 영국규제에 연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U입법으로부터 규정되는 모든 의무이고, origin B는 존재하지 않음. 반면, origin C는 오로지 국내법, 명령, 허가 및 다른 지도 등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의무를 의미함
- 소비세는 EU와 영국 입법의 혼합(mixture)이라고 할 수 있음. 몇몇 EU 입법은 EU전역의 소비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무의 대부분은 영국 국내법, 명령으로부터 발생함. 소비세에는 origin A가 없고, origin B의 경우 EU입법과 어떤 명령이 결합하여 영향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origin C는 국내법, 명령, 허가 등과 관련되어 식별되는 모든 의무를 의미함

#### (4) 정보의무(IO)와 서식(form)의 연결

- 정보의무는 하나의 서식에만 연결되기도 하고, 여러 서식에 연결되기도 함. 여러 서식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정보의무는 하나의 서식에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내며 모든 서식은 관련영역으로

만 설명됨

- 자료의 프레임워크는 서식의 PDF나 URL 링크 등은 자주 변해 계속 업데이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 서식의 수가 2개인 EC Sales List의 경우를 타겟으로 삼아 서식을 찾아 보았으나, Volume 2의 보고서에는 서식의 이름도 제시해주지 않았을 뿐 더러 서식을 모아둔 웹사이트도 없어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였음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VAT 101 Form]과 [New Means of Transport Form]을 찾을 수 있었음
- EC Sales List에서 서식과 관련된 행정부담은 2,413,579(£)으로 97.47%를 차지하고 있고, 서식과 관련되지 않은 행정부담은 62,718(£)으로 2.53%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에서 서식과 관련된 정보의무는 보고유형에 속하는 2개이고, 나머지 6개의 정보의무는 서식과 무관함. 그러나 서식과 관련된 정보의무에 따른 부담이 97.47%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도로 보면 서식과 관련된 정보의무가 더 중요함

#### (5) 정보의무 유형에 따른 정보의무 범주화

□ SCM은 12개의 정보의무유형을 상정

- 그러나 어떤 조세 영역에서는 조세 목적에 맞게 특정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HMRC에 지도(guidance)를 요청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KPMG는 12개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정보의무유형, ‘지도 신청(Application for Guidance)’을 추가함
- 아래의 <표 1>에서 SCM의 정보의무유형과 프로젝트에서의 정보의무유형이 나오는데 이는 조세영역에 한정된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의무 유형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질 필요가 있었음을 의미

<표 1> 영국 HMRC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13가지 정보의무유형 및 구성비

	SCM에서의 정보의무 유형	HMRC 프로젝트에서의 정보의무 유형	수 (개)	구성비 (%)
이의제기	Framing appeals and complaints	Appeals against assessments and HMRC decisions	540	20
제3자를 위한 정보제공	Providing statutory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Providing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449	17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Statutory labelling for third parties	Labelling and marking	288	11
협조	Co-operating with audits/ inspections	Co-operating with HMRC enquiries visits and inspections	282	10
기록유지	Keeping commercial emergency plans and programmes updated	Record retention	272	10
보조금 등 신청	Applications for subsidies, grants, allowances or credits	Claims, elections, and applications for reliefs	255	9
조사	Carrying out inspections	Inspections to be carried out by business	201	7
등록	Entry in a register	Entry in an external (normally HMRC) list or other permanent record	184	7
보고	Returns and reports	Provision to HMRC of regular returns and payment of tax	159	6
신고	Notification of activities/ Registration	Registration, or notifying HMRC of an event or circumstance	27	1
위임신청	Applications for authorisation	Application by the business for a statutory clearance, authorisation, or for a certain status.	21	1

	SCM에서의 정보의무 유형	HMRC 프로젝트에서의 정보의무 유형	수 (개)	구성비 (%)
인허가 신청	Applications for permission or exemption	Applications for permission or exemption	9	0
지도신청	Application for Guidance	Application for HMRC guidance, opinion or ruling.	5	0
총 계			2,692	100

※ 자료: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2006.3.20), p.22

- 정보의무 유형과 총 부담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HMRC와 BRE의 프로젝트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나 이는 조화시킬 수 있음

(6) 조세 영역별로 정보의무 범주화

- 영국 조세 규제 가운데 28개 조세 영역을 확인하고(<표 2>), 이 영역에 따라 정보의무를 분류
- 28개 영역 외에 4개 영역은 SCM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무가 없거나(Money Laundering, Estate Tax Treaties, Insurance Contribution Treaties) 28개 조세영역에 중복적으로 할당되어(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추정대상에서 제외됨

<표 2> HMRC 행정부담 측정 대상 28개 조세 영역

Aggregates Levy	Inheritance Tax
Air Passenger Duty	Insurance Premium Tax
Capital Allowances	Intrastat
Capital Gains Tax	Landfill Tax
Climate Change Levy	Pensions
Construction Industry Scheme	Petroleum Revenue Tax

Corporation Tax	Stamp Duty
Customs	Stamp Duty Land Tax
Double Tax Treaties	Stamp Duty Reserve Tax
EC Sales List	Tax Credits
Employer Taxes	Tax Management Provisions
Excise Duties	Tonnage Tax
Gaming Duties	Value Added Tax
Income Tax for Businesses	Withholding Tax

(7) 행정활동 파악

- 16가지 행정활동은 BRE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SCM에 적용됨
- 다음의 <표 3>은 HMRC 행정부담 측정 프로젝트에서 실제 행정활동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줌

<표 3> HMRC 행정부담 측정에서의 16가지 행정활동

	SCM에서의 행정활동	프로젝트에서의 행정활동
정보제공의무의 숙지	Familiarisation	Understanding the requirements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retrieval
평가	Assessment	Identifying relevant information
계산	Calculation	Calculation
수치의 제시	Presentation of figures	Presentation of figures
검토	Checking	Checking

	SCM에서의 행정활동	프로젝트에서의 행정활동
수정	Correction	Correction
기재사항의 작성	Description	Narrative
정산/지불 등	Settlement/payment	payment
내부회의	Internal meetings	Internal meetings
외부회의	External meetings	External meetings or presenting in person
정부당국에 의한 감사	Inspection by public authorities	Interaction with HMRC during inspection
정부당국에 의한 감사결과로부터의 시정	Correction resulting from inspection by public authorities	Correcting errors identified by HMRC
법정 요구사항에 대한 훈련	Training	Specific training
복사, 배분, 서류정리 등	Copying, distributing and filing	Copying and putting on file
정보의 보고와 제출	Reporting and submitting information	Submitting information

○ 각 행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는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Annex A, p.21-22참조

□ Step 1에 따른 조사결과 조세 영역별 규제, HMRC 서식, 정보의 무, 자료요구의 수는 다음의 <표 4>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조세 영역에는 총 279개의 서식, 2,692개의 정보의무, 6,614개의 자료요구가 존재함. 단, 규제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조세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총계를 구하지 않았음

<표 4> 조세 영역별 규제, HMRC 서식, 정보의무, 자료요구의 수

Tax Area	규제 수	HMRC 서식 수	정보의무 수	자료요구 수
Aggregates Levy	3	5	28	78
Air Passenger Duty	4	2	13	34
Capital Allowances	3	-	51	113
Capital Gains Tax	8	2	68	141
Climate Change Levy	4	5	48	191
Construction Industry Scheme	2	14	63	234
Corporation Tax	43	11	326	714
Customs	43	29	349	861
Double Tax Treaties	2	-	6	22
EC Sales List	2	2	8	12
Employer Taxes	22	27	164	580
Excise Duties	70	38	378	625
Gaming Duties	15	19	66	147
Income Tax for Businesses	34	12	194	531
Inheritance Tax	5	-	40	66
Insurance Premium Tax	5	7	48	108
Intrastat	2	1	13	25
Landfill Tax	2	10	47	232
Pensions	17	40	157	381
Petroleum Revenue Tax	10	12	63	75
Stamp Duty	23	-	51	107
Stamp Duty Land Tax	3	2	71	114
Stamp Duty Reserve Tax	3	-	18	48

Tax Area	규제 수	HMRC 서식 수	정보의무 수	자료요구 수
Tax Credits	1	1	15	20
Tax Management Provisions	5	4	68	145
Tonnage Tax	2	1	15	24
Value Added Tax	63	30	299	954
Withholding Tax	4	5	25	32
Total	-	279	2,692	6,614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p. 17

## 2. Step 2: 관련규제의 확인 및 구분

- HMRC가 담당하는 규제는 모형에 포함되어야하고 다른 행정부처에서 담당하는 규제는 배제되어야 함
  - HMRC와 KPMG는 행정비용이 측정되어야 하는 규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의
  - 관련 규제가 파악되고 같은 정보의무가 한번 이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비용부담자가 명확해야 함
  - HMRC와 KPMG는 규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규제의 정보의무나 자료요구가 다른 규제의 정보의무나 자료요구와 같은지 중복여부 또는 규제들이 서로 어느 정도까지 호환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 3. Step 3: 기업분류(segment)의 파악

- 기업들의 자료요구에 소요되는 자원과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예: 기업규모, 정보처리 자동화, 외주처리, 산업 등)들을 구별하고 이들을 분류단위(segment)로 활용할 수 있음
- 영국 HMRC 행정부담 측정 과정에서 분류를 위해 사용된 변수

는 ‘사업체 규모’와 ‘사업 절차’였음

- 사업체 규모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0명인 기업은 Nano, 1명에서 9명인 기업은 Micro, 10명에서 49명은 Small, 50명에서 249명은 Medium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250명 이상인 기업은 Large로 구분함

<표 5> 규모에 따른 사업체의 구성비율

	Nano (0명)	Micro (1~9명)	Small (10~49명)	Medium (50~249명)	Large (250명 이상)	Total
구성비 (%)	72.0	23.0	4.0	0.8	0.2	100.0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p. 15

- 사업 절차를 통해 사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과정상 중요한 부분을 수행할 때 회계사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웃소싱)과 자체적으로 의무를 따르는 사업 (사내 처리)
  - 전자정부(e-government) 시스템 활용하는 사업과 전자정부(e-government) 시스템 활용하지 않는 사업

#### 4. Step 4: 모집단, 시간급과 빈도의 파악(수량변수 확인)

##### 모집단 확인

- 규제가 적용되는 모집단 규모의 추정은 때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집단 규모가 사전적으로 법규에 의해 적용대상이 확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신청 건수나 적용 건수 등 사후적인 사건의 발생(규제내용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앞서 언급된 것처럼 조세 관련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KPMG는 정보의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고, HMRC 정보관리 시스템이 정보를 모두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집단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웠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PMG 팀은 genetic population model을 적용하여 결과를 얻었고, HMRC가 그 수치를 검토하는 등 두 기관은 서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정보의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체의 전체 모집단 규모를 확정했음
- 일차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모집단이 사전적으로 식별된 후 step3에서 정한 분류(segment)에 따라 모집단을 구별한 다음 이들 분류별 모집단을 다시 각각의 정보의무를 만족시켜야 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정보의무별 모집단으로 구분했음

비율 확인

- 별다른 구체적인 사정이 있지 않다면, 정보의무가 하나의 자료요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요구에 대한 비율은 '1'로 처리했음

빈도 확인

- 일반적으로 빈도는 '1'이었으나 신고가 1년에 여러 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횟수가 빈도가 됨

5. Step 5: 기업 인터뷰와 전문가 평가

- HMRC와 KPMG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Step 5에서 전체 정보의무의 50% 이상에 대해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심각한 방해나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분야에 속하는 정보의무에 대

해서는 모두 인터뷰가 이루어졌음

- 정보의무는 관련 그룹(Subject Groups)을 활용하여 인터뷰나 전문가 평가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룹을 묶는 것은 인터뷰를 계획·진행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이 되었음

#### 6. Step 6: 비용변수의 확인

- 내부 비용
  - 조세 행정활동에서 9가지 근로자 유형이 확인, 고용주가 부담하는 시간당 비용은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2005년도 조사 자료의 상대적 직업군에 따른 상대적 임금을 바탕으로 30%의 간접비율을 적용한 결과임

<표 6> 근로자 유형에 따른 시간당 고용주 부담 비용

근로자 유형	시간당 고용주 부담 비용(£)
General office assistants/clerks	10.17
Accountant and wage clerk, book-keeper, other financial clerks	11.70
Personnel and industrial relations officers	15.13
Office manager	18.50
Business and finance officers	18.93
Tax experts	19.75
Chartered and certified accountants	23.83
Functional manager	26.94
Corporate manager and senior official	47.70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Annex A, p. 30

<표 7> 자영업자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자영업자에 대한 가격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
시간당 평균 가격	11.70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Annex A, p. 30

□ 외부 비용

- 특정한 정보의무를 돕기 위해 외부적 자문이 활용되는 영역에서, 외부 중재자에 의해 부가되는 외부 비용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 외부 비용과 관련된 데이터는 인터뷰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수집됨

취득 비용

- 취득 비용은 정보의무나 자료요구를 따르기 위한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지출과 관련이 있음. 취득 비용의 주요 유형은 소프트웨어, 저장 비용, 우편요금, 사무용품, 이름표 부착 등

7. Step 7: 인터뷰 가이드 작성

매뉴얼 참조

8. Step 8: step 1-7에 대한 HMRC의 검토

매뉴얼 참조

III. 단계2 : 시간과 비용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

단계1의 예비분석을 바탕으로, 단계2의 작업은 주어진 범위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기업들과 인터뷰를 통한 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전체적인 작업은 각각의 정보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 및 비용 변수에 대한 표준화된 개별 분류(segment)의 데이터 구조상의 모든 “항목”들을 기입하는 것
- 이것은 확인된 각 분류(segment)에서 3개에서 5개 사이의 대표적인 기업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짐

1. Step 9: 인터뷰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택

사업체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선택되었음

- (전화 인터뷰의 경우)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영국 전역을 상대로 하는 콜센터를 통해

- (표적 인터뷰의 경우) 무역 기구, 자문위원회 등과의 접촉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 영역의 기업들을 선정한 KPMG 조세팀을 통해
- (FGI의 경우) KPMG가 개발한 독립적인 회계사 및 법률가들의 네트워크인 PASAS를 통해

## 2. Step 10: 기업체 인터뷰

- 기업체 인터뷰에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활용되었음
  - 대면 인터뷰
  - 전화 통화 인터뷰
  - Focus Group Interview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참조

## 3. Step 11: 활동별 각 분류(segment)에서 시간과 자원추정의 표준화 및 완성

- 정상적인 효율기업의 행정활동에 대한 하나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류(segment)의 결과를 표준화함
  - 인터뷰 결과에 갭이 존재할 경우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
- 측정결과의 검증
  - 검증은 비용이 많이 나온 것을 중점적으로 하되, (i) 분류(segmentation) 문제, (ii) 수량 및 가격변수간 불일치 문제, (iii) 이중계상 문제, (iv) 외부비용 과다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증
  - 검증결과 조치

## 제 1 장 영국의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 제외(또는 재측정): “표준화 테스트” 통과 실패, 타측정치와 일관성 부족, 명백히 비정상적인 측정치
- 수정: 매년 발생치 않는 비용을 매년 발생하는 비용으로 측정하거나,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의 주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 □ 표준화 테스트

- 각 자료요구별로 측정된 측정치(2개 이상)를 비교하고, 해당 자료요구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자료요구의 측정치와 비교
- 테스트 종류: (i) 행정활동, (ii) 추정시간, (iii) 내부비용, (iv) 전체 비용
- 비교결과 다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측정치에 대해서는 기준 충족시까지 재평가, 추가 인터뷰 등을 실시
- 1억₩이하: 1번 테스트(행정활동 비교)는 제외, 2~4번 테스트중 2개의 측정치가 4 SD(표준편차)이내, 실패시 표본 재평가
- 1~10억₩: 1번 테스트 결과 일관성유지, 2~4번 테스트중 2개의 측정치가 3SD이내, 실패시 재평가
- 11억₩이상: 1번 테스트 결과 일관성유지, 2~4번 테스트중 2개의 측정치가 2SD이내, 실패시 추가 인터뷰

### □ 전문가 검토

- 측정결과는 모니터링 그룹(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총괄 조정기구로부터 검증을 거침

#### 4. Step 12: step 9-11까지의 HMRC 검토

### □ 매뉴얼 참조

## IV. 단계3: 계산, 데이터 제출, 보고서

## 1. Step 13: 승인된 데이터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확장

□ 매뉴얼 참조

## 2. Step 14: 보고와 데이터베이스로의 전송

□ 매뉴얼 참조

## V. 행정부담측정결과의 요약

&lt;표 8&gt; 규제의 근원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결과

	EU Regulation (£ m)	EU Directive (£ m)	Only Domestic (£ m)	Other Int'l (£ m)	Total (£ m)	Share of HMRC Total(%)
origin A	766	842	-	-	1,608	32%
origin B	-	97	-	1	98	2%
origin C	-	-	3,394	-	3,394	67%
Total					<b>5,100</b>	<b>100%</b>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p. 24-6

- 규제의 근원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결과를 보면, origin C가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origin A가 32%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는 EU국가의 행정규제간소화를 위해서는 각 국가 내에서의 규제간소화를 위한 노력에 더해 EU 규제의 간소화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함

&lt;표 9&gt; 기업규모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결과

제 1 장 영국의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Nano (0명)	Micro (1~9명)	Small (10~49명)	Medium (50~249명)	Large (250명 이상)	Total
사업체 구성비 (%)	72.0%	23.0%	4.0%	0.8%	0.2%	100.0%
행정부담 의 크기 (£m)	1,216	1,925	925	364	642	5,100
행정부담 구성비 (%)	24%	38%	18%	7%	13%	100.0%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p. 27

- 사업체의 수와 행정부담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으며, 행정부담의 약 80%는 Nano에서 Small 규모의 기업에서 발생함. 이는 소규모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시급함을 시사함

<표 10> 정보의무 유형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결과

정보의무 유형	행정부담의 크기 (£m)	구성비 (%)	정보의무의 수 (개)	구성비 (%)
Framing appeals and complaints	16	0%	159	6%
Providing statutory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892	17%	201	7%
Statutory labelling for third parties	15	0%	5	0%
Cooperating with audits/ inspections	141	3%	272	10%
Keeping commercial emergency plans and programmes updated	183	4%	255	9%

Applications for subsidies, grants, allowances or credits	327	6%	449	17%
Carrying out inspections	11	0%	9	0%
Entry in a register	0	0%	21	1%
Returns and reports	2,942	58%	288	11%
Notification of activities/ Registration	278	5%	540	20%
Applications for authorisation	183	4%	282	10%
Applications for permission or exemption	100	2%	184	7%
Application for Guidance	12	0%	27	1%
총 계	5,100	100.0%	2,692	100.0 %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p. 22

- 가장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우리나라의 보고에 해당하는 Returns and reports임. 그 다음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차지하고 있음. 외부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담이 강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전달비용을 줄여주는 행정전산화의 보급이 전체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표 11> 조세영역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결과

Tax Area	행정부담	
	£ m	구성비(%)
Aggregates Levy	1,020	20%
Air Passenger Duty	857	17%
Capital Allowances	793	16%
Capital Gains Tax	759	15%

제 1 장 영국의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Tax Area	행정부담	
	£ m	구성비(%)
Climate Change Levy	608	12%
Construction Industry Scheme	321	6%
Corporation Tax	294	6%
Customs	151	3%
Double Tax Treaties	66	1%
EC Sales List	49	1%
Employer Taxes	49	1%
Excise Duties	45	1%
Gaming Duties	18	0%
Income Tax for Businesses	13	0%
Inheritance Tax	12	0%
Insurance Premium Tax	10	0%
Intrastat	8	0%
Landfill Tax	7	0%
Pensions	4	0%
Petroleum Revenue Tax	4	0%
Stamp Duty	2	0%
Stamp Duty Land Tax	2	0%
Stamp Duty Reserve Tax	1	0%
Tax Credits	1	0%
Tax Management Provisions	1	0%
Tonnage Tax	1	0%
Value Added Tax	0	0%
Withholding Tax	0	0%
Total	5,100	100%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p. 20

- 상위 8개의 조세영역에서 행정부담의 95%가 발생하고 있음. 큰 부담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부터 규제를 간소한다면 행정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임

<표 12> 행정활동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결과: Value Added Tax의 경우

제 2 절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행정활동	Form-filling related		Non Form-filling related		Total	
	£ 000	%	£ 000	%	£ 000	%
Familiarisation	5,268	0.82%	4,057	0.63%	9,325	1.44%
Information retrieval	43,359	6.71%	168,534	26.09%	211,892	32.80%
Assessment	22,925	3.55%	127,113	19.68%	150,038	23.23%
Calculation	21,483	3.33%	60,247	9.33%	81,730	12.65%
Presentation of figures	5,621	0.87%	45,851	7.10%	51,472	7.97%
Checking	14,517	2.25%	34,961	5.41%	49,478	7.66%
Correction	3,327	0.51%	8,286	1.28%	11,612	1.80%
Description	4,871	0.75%	23,205	3.59%	28,077	4.35%
Settlement /payment	-	-	5,788	0.90%	5,788	0.90%
Internal meetings	151	0.02%	912	0.14%	1,063	0.16%
External meetings	3,894	0.60%	1,057	0.16%	4,951	0.77%
Inspection by public authorities	0	0.00%	323	0.05%	323	0.05%
Correction resulting from inspection by public authorities	-	-	-	-	-	-
Training	88	0.01%	343	0.05%	431	0.07%
Copying, Distributing and filing	3,719	0.58%	27,331	4.23%	31,049	4.81%
Reporting/submittin g information	3,400	0.53%	5,315	0.82%	8,716	1.35%
내부비용 총계	132,623	20.53%	513,322	79.47%	645,945	100.00%

총 부담에  
서의 비중  
(%)

총 부담에  
서의 비중  
(%)

총 부담에  
서의 비중  
(%)

제 1 장 영국의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행정활동	Form-filling related		Non Form-filling related		Total	
	£ 000	%	£ 000	%	£ 000	%
내부비용	132,623	13.00%	513,322	50.33%	645,945	63.33%
취득비용	341	0.03%	108,230	10.615%	108,570	10.64%
외부비용	201,014	19.71%	64,419	6.32%	265,433	26.02%
총 행정부담	333,977	32.74%	685,971	67.26%	1,019,948	100.00%

※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Report by Tax Area  
Part 27: Value Added Tax, p. 17

- 행정활동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전 조세영역의 집계자료가 없음. 이는 행정활동의 합은 내부활동의 합계의 값으로 행정부담을 구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위의 표는 부가가치세의 행정활동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의 요약을 보여주고 있음

##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 제 1 절 측정의 기본가정

#### I.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SCM 기본 개념 및 가정

##### 1. 규제(Regulation)

- 국무총리실의 매뉴얼에 따르면, 행정부담 측정대상이 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이며, 여기에 지방정부의 자체규제는 포함되지 않고 국방,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는 아니지만 민간기업에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측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따른 규제의 유형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규제라고 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규제로 규정되어 있음

<표 13> 규제의 유형4)

구 분	세부내용
(유형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유형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4)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분	세부내용
(유형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공급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금지
(유형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등록규제에의 접근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제도로 인해 비교적 용이하나 미등록규제의 경우 접근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당해 규제에 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달리 기존규제등록은 위원회의 요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으며, 미등록규제의 경우 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도록 함. 즉, 규제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가 등록되어있다고 볼 수 없음. 특히 비입법규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미등록규제의 존재를 고려할 경우, 규제를 파악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됨. 하나는 법령으로부터 접근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로부터 접근하는 방법임
  - 법령으로부터 접근하는 방법의 경우, 등록규제인 경우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미등록규제, 특히 그 중 비입법규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령만으로 규제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고시 등 행정규칙과 실제 운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은 물론 전문

적인 지식도 요구됨

- 이러한 비입법행정규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측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영국과 독일과 같은 국가는 측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마다 다른 태도를 보임. 한국의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행정국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비입법행정규칙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제도로부터 접근하는 방법의 경우, 하나의 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집단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고시 예규 등 행정규칙에 의해 받는 실질적인 규제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규제 및 정보의무, 자료의무를 파악하고자 함

## 2. 정보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 정보의무(IO)는 정보를 모으고 준비해서 규제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무로서 여기에는 감사, 방문 또는 조사 등에 협조하여 다른 사람이 정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된다고 하나, 이의 경우 수량변수의 확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함
- 정보의무의 수가 많은 경우의 편의를 위해 정보의무를 다시 유형화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의 법인세 부문의 행정부담을 살펴보면, 43개의 규제와 326개의 정보의무, 714개의 자료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326개의 정보의무는 10개의 정보의무유형으로 묶여져 분석됨<sup>5)</sup>
- 규제기관에 대한 정보의무 외에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도 존재

---

5) HMRC Measurement Project: Report by tax area part 7: corporation tax p.8-12

하는데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의 예로는 제품 라벨 작업(예를 들어,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표시) 및 투자상품에 수반되는 소비자에 대한 재정 안내서 제공 등을 들 수 있음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정보의무에 따른 행정비용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준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를 측정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사안별로 측정기관과 총괄부서에서 포함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두 가지 타입의 정보제공 모두를 측정하였으며, 영국은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를 처음에는 제외하였으나 나중에는 측정에 포함시킴. 영국의 조세분야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한 HMRC Measurement Project에서 법인세 부문 등에서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부담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예시된 정보의무에서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는 가격표시의무와 가전제품의 에너지등급과 같은 정보 표시의무와 직원에 대한 공시의무, 공고의무와 같은 정보제공의무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짐
  - 본 보고서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의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일단 정보의무로 분류는 하되, 실질적 준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부담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함
- 이러한 정보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한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와 SCM의 정보의무는 이런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법에서 규제를 분리

하고 규제에서 정보의무를 찾아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음

- 중소기업연구원에서 2007년 12월에 실시한 ‘기업의 행정부담비용 시범측정’의 경우 정보의무를 (1) 인허가신청, (2) 신고, (3) 등록, (4) 보고, (5) 조사 및 감사, (6) 서류 비치 및 갱신, (7)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8)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유형화하여 시범 측정하였으며, 제3자를 위한 정보의무가 실질적 준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해야한다고 함

### 3. 자료요구(Data Requirement)

- 개별 정보의무는 한 가지 이상의 자료요구를 포함하게 되는데, 자료요구는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나 일련의 정보를 의미
-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의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에서는 이직, 피고용인 수, 수입, 사회보험기여율, 근무시간 등 보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자료요구로 파악함에 비해, 한국의 매뉴얼에서는 자료요구의 예로 상표권 신고 시의 상표등록원부, 카달로그 또는 사진 등을 드는 등, 주로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별지서식과 첨부서류로 자료요구를 파악하고 있음
- 자료요구는 두 가지 이상의 규제와 관련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비용은 반드시 한 번만 계산되어야 함
- 국무총리실의 매뉴얼에서는 자료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2007년 12월에 실시한 ‘기업의 행정부담비용 시범측정’의 경우 자료요구를 유형화하는 작업은 소요시간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의 표준비용모형에서는 자료요구가 정보의무를 이해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향이 강한 만큼 자료요구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비용의 측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14> 자료요구의 유형과 예시

자료요구 유형	예 시
기업자료(business data)	기업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자료(production data)	생산규모, 생산물
인사자료(personnel data)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
구매자료(purchasing data)	투입물에 대한 정보
판매자료(sales data)	매출액
생산품자료(product data)	소비자 정보, 생산품 자체 정보
회계자료(accounting data)	위 6개 분류로부터 처리된 정보

#### 4. 행정활동(Administrative activities)

- 각각의 자료요구 사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면 수많은 특정 행정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함
  - SCM은 이러한 각각의 행정활동을 완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내부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외주를 통해 외부에서 수행될 수도 있음.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장비를 취득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설비취득이 단지 요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취득비용도 추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행정활동의 기본은 네덜란드의 16개의 표준행정활동임. 대부분 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과 같이 14개의 표준행정활동으로 재구성하거나, 영국의 경우처럼 경우에 따라 7개의 표준행정

활동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음(<그림 3>)

<그림 3> 표준행정활동 및 축약된 행정활동



출처: 『행정부담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2007.07)』, 한국행정연구원 p.8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Cost Model Methodology Manual of the Federal Government』, 독일연방통계청 p.47

- 단, 영국의 경우에도 조세분야의 행정부담을 측정한 HMRC Measurement Project의 경우 16개의 표준행정활동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모든 행정활동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표준행정활동을 세

분하는 것이 국가별, 지역별, 제도별 특수성에 적합한 행정활동의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표준행정활동에서 제 3자로부터의 정보 취득 및 컨설팅에 관한 행정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분류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절한지 여부는 결국 측정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측정기관과 총괄부서가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례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2007년 12월에 실시한 ‘기업의 행정부담비용 시범측정’의 경우 (1) 정보의무사항 숙지, 필요한 사항의 이해, (2) 자료/정보 검색, 복사, 수집 및 정확성 확인, (3) 수치 계산 및 회계처리(비교, 검토, 확인, 정정 포함), (4) 서류 작성 및 보고(데이터의 기재, 도면 및 물건 제작, 부착, 전체적인 검토 및 상급자 결재 획득, 보고서 제출 등), (5) 지불 및 결제, (6) 내부회의(회의주관자만을 기준으로 기재), (7) 외부감사 수검(감사인 주관 회의참석, 감사수검준비 및 이행, 시정조치 결과보고 등), (8) 기타를 행정활동으로 제시하여 측정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는 표준행정활동 분류가 복잡하고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해서 기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중소기업연구원의 분류처럼 7가지의 보다 간단한 표준행정활동을 기준으로 행정부담을 측정하였음

## II. 측정대상 기업

### 1. 민간기업의 정의

□ 측정대상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피규제그룹은 민간기업, 일반 국

민과 공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나 측정대상 기업의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됨.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선사업과 자발적 영역의 포함여부, 공기업의 포함여부임

- 덴마크와 스웨덴은 민간기업에 대한 가장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이보다 민간기업의 개념을 확대해 공공기업과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공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영국도 자선사업과 자발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와 함께 독립채산제의 공기업도 포함함
- 독일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의 주체를 “경제”, “시민”, “행정”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이 중 “경제”에 대해 사적 영역의 범주 안에서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모든 단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이 때 표준적 정의가 없다고 하여 “기업체 (enterpris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또한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독일연방법 등에 의해 정보제공의무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경제”에 포함됨
- 한국의 매뉴얼에서 측정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피규제그룹은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임
-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담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 2. 정상적 효율기업(The Normally Efficient Business)

- SCM측정에 필요한 정보수집은 평균적 기업(average firm)이 아닌 전형적 기업(typical firm)에 기초해서 이루어짐. 이와 관련해 정상적 효율기업의 개념이 등장
- 이 개념은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정활

동을 수행하는 측정대상 그룹 내의 기업들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예상보다 더 낮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업들을 의미. 따라서 SCM의 측정에서는 특정한 표준행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비효율적인 기업체들은 제외시킴

- 정상적 효율기업은 모집단 내의 다수의 전형적인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의뢰한 업무를 처리하는 외부의 자문가나 기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음
  - 인터뷰의 목표는 이러한 기업들이 자료요구와 관련된 개별적인 행정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답변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가 필요함. 이러한 대조를 통해 답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상적인 효율기업의 행정활동에 소요된 표준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기업체 인터뷰 실시

### 3. 하한선 설정(threshold limit)

- 모든 정보제공의무가 측정된 경우에는 이 모든 가치들의 총합이 국가경제의 총행정부담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나,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것이 하한선임
  -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공식적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의 행정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전문가 평가 결과 대상 기업이 작은 규제는 측정에서 제외함. 덴마크의 경우 연간 행정업무에 소요된 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한선 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나 향후 정

책적 판단에 따라 대상기업수가 적고 단순한 정보의무의 경우 측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III. 비용변수

<표 15> 행정부담의 계산6)

정보의무	수량변수				가격변수								총행정부담비용
	대상기업수	빈도수	연간횟수	소계	내부비용				외부비용				
					소요시간	인건비	간접경비	소계	취득비	외부용역비	소계		
I	A	B	C	D= A*B or D=C	E	F	G	H= E*F +G	I	J	K= I+J	L= H+G	M= D*L
...													

**총행정부담비용 = 수량변수소계 X 가격변수소계**  
**수량변수 = (대상기업 수 X 빈도수) or (연간횟수)**  
**가격변수 = (내부비용) + (외부비용)**  
**= [(평균소요시간 X 임금률)+간접경비]+(취득비+외부용역비+취종값)**

#### 1. 수량변수

수량(Quantity)은 영향을 받는 기업체들 모집단 규모(size of the population)와 매년 완료되어야 하는 활동의 빈도로 구성됨

$$\text{Quantity} = \text{Population} \times \text{Frequency}$$

○ 모집단은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들의 수. 따라서 행정비용을 계산

6) 실제 계산은 제2장 제2절 5. 5단계에서 볼 수 있음

하려면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 그룹(target group)과 기업체의 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기업이 매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회수, 즉 빈도도 확인되어야 함

- 수량계산의 예: 연간 회계보고서 제출의무는 특정 기업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기업(예를 들어 10만개)에게 적용되며 매년 한번 제출한다면

$$\text{Quantity} = 10\text{만(기업체 수)} \times 1 \text{ (빈도)} = 10\text{만}$$

- 따라서 회계보고서 제출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부담은

$$\text{행정부담} = \text{가격 (614만원)} \times \text{수량 (10만)} = 614\text{십억원}$$

- 단, 빈도수를 알 수 없고 연간 정보제공 횟수만이 나타난 경우는 연간횟수를 수량변수로 봄

-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기본 SCM 공식을 얻음

- 행정활동 당 비용 (또는 자료요구 당 비용)

$$= \text{가격 (시간당 인건비} \times \text{시간)} \times \text{수량 (모집단 수} \times \text{빈도수)}$$

## 2. 가격변수

- 가격변수에서는 효율적인 기업이 해당 행정활동의 수행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를 계산

### (1) 내부비용

- 평균소요시간

- 각 행정활동을 1회 완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기업 인터뷰, 전문가 평가 등에 의거하여 측정함

□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피고용자의 평균임금인 임금(gross wage)와 휴일수당, 각종 보험료 등 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임금비용(non-wage cost)로 구성됨. 이때 가격변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구한 개별 기업체의 가격변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직종에 따른 통계적 평균값 또는 중위값 등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모형 전체의 일관성이 유지됨
- 가격변수의 인건비의 값은 (시간당 임금을 X 시간)을 통해 도출함
- 시간당 임금은 응답계층 평균연봉을 국내 전산업 연간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도출함

□ 간접경비

- 간접경비는 개별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직접적인 고용비용(direct pay cost)에 추가되는 비용
- 간접경비는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임대료 또는 건물 감가상각), 전화비, 난방비, 전기세, IT장비 임대료 등과 같이 인건비와 함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포괄. 행정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실효임금이므로 직접임금만 고려하면 인건비가 과소추정되는 결과 초래.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과 기업규모별로 간접경비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간접 경비율을 설정하기는 어려워 일정한 마크업을 사용
- 총비용의 구성요소는 동일하나 총비용의 구성 비율은 관련 국가 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 나타남. 가장 널리 이용되는 간접경비율은 25%이나 25%를 모두 적용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달리 네덜란드의 경우, 금융분야에는 50%의 간접경비율을 적용함. 독일의 경우도 25%에서 30%정도의 간접경비율을 적용할

것을 고려함

- 한국의 경우, 표준비용모형에 적용되는 간접경비율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써 실제 기업이 적용하는 간접비율을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간접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취득비용

- 취득은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정보의무/자료요구를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생
- 취득물의 가치는 예상되는 구입물의 연평균 비용으로 영향을 받는 모집단의 수를 곱해서 계산. 한 가지 일반적인 취득비용은 예를 들면 우편비용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예를 들어 디지털 방식의 보고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별 IT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IT 장비는 기업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구입비용은 측정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고 간접경비(overhead)를 통해 간접적으로 포함됨

## (3) 외부비용

- 외부비용은 외부용역비로써, 이러한 외부의 인건비는 계약에 따른 지불비용을 말하며 예를 들면 회계사, 법무사 등의 사용 비용으로 이런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의 임금비용에 기초한 시중의 시세로 결정되는데 이들 비용도 인터뷰를 통한 개별 업체의 계약비용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직의 표준적 비용을 사용해야 함

## (4) 일상행정비용(Business As Usual Cost)

- 일상행정비용(BAU cost)은 정보의무가 없어도 지속될 행정활동의 비용을 의미
- 위의 예에서 만약 IT 장비가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구입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기업의 행정활동을 위해 구입된 것이라면 이것은 정보의무로 인한 행정부담으로 볼 수 없고 기업의 일상 행정비용에 해당함. 따라서 이런 비용이 행정부담 계산에 포함되었다면 사후적으로 제거해주어야 함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용이 정보의무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담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정보의무가 존재하면 일괄적으로 행정부담으로 계산하고 사후적으로 일상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심사하여 제거함

#### IV. 기타 측정과 관련된 가정

##### 1. 완전준수(Full compliance) 가정

-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경제주체가 이러한 규제를 100%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실질적 준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완전준수의 경우의 잠재적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는 완전준수의 가정을 따르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 행정부담과 측정된 행정부담의 크기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단, 네덜란드의 경우는 만약 실질적 준수율(Actual compliance)의 통계가 이용가능한 경우, 실질적 준수율에 의한 실질적 행정 부담을 측정

##### 2. 일회성 비용(One-off costs)과 반복비용(recurring costs)

- 정보의무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분하고 일회성 비용은 측정에서 제외

- 일회성 비용(One-off costs)은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어 기업들이 처음 적용할 때 단 한번 발생하는 비용인데, 현존 규제를 처음으로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 아님. 예를 들면 기업이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 새로운 분야에 적용되는 기존의 정보의무 부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 아님. 일회성 비용은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만 일회성 비용이 발생
- 일회성 비용은 기준측정(baseline measurement)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의 사전측정(ex-ante measurements)에는 포함됨. 즉 일례로 규제의 변화로 회사들이 지침서를 읽도록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규제에 의한 비용으로 측정됨
- 반복발생비용(Recurring costs)은 기업체들이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행정비용
  - 반복발생비용에는 부가세 신고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각종 허가 신청과 같이 개별 기업에게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음. 이러한 비용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단 한 번만 경험하는 행정업무일 수도 있음. 기업에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상황의존적 비용으로 창업이나 사업확장과 같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됨. 결국 반복발생비용은 이러한 비용이 전체경제의 수준에서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즉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일 년에 한번 혹은 그보다 덜 빈번하게 특정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뿐이지만 전체 경제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되는 비용에 해당

### 3. 행정비용 상환규제

- 기업들이 정보의무에 따른 행정비용을 일정한 형태로 상환 받는다고 하면 이런 규제도 분명 측정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상환금액도 기록되어야 함. 따라서 이런 경우 행정비용의 측정은 상환금액을 제외한 순비용으로 계산함
-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행정비용을 상환하는 정보의무를 측정하지 않은 반면 영국은 이런 정보의무도 순비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음

### 4. 기업구분(Segmentation)

- 측정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대상을 잘 구분하여 가능한 한 동질적인 대상끼리 분류하여 측정해야 함. 기업의 정보의무 처리능력과 투입 자원 등이 행정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한 변수인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측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들의 구분(segmentation)이 필요함
- 기업구분은 정보의무/자료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에 영향을 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기준은 법령과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규모와 정보의무 준수가 전산화된 자동화 과정(디지털 솔루션)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또는 외부 업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기업의 업종과 규모가 기업구분에 중요한 변수로 기능함. 기업규모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을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표 16> 상시근로자수기준 기업규모 구분

구 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50인 미만	50~299인	300인 이상
대형종합소매업, 통신업 등	10인 미만	10~299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어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10~199인	200인 이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10~99인	100인 이상
그 밖의 모든 업종		10~49인	50인 이상

※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1호, 제8조, 별표1 등 참조

-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법에 따른 분류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예를 들면, 종업원이 없는 기업(nano), 10명 이하(micro), 11~50명 이하, 등 측정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구분이 필요함
- 독일은 경제적 활동을 12개의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 총 기업의 수와 고용인의 수를 분석하고 있다. 표준비용모형에 있어서 사업등록과 통계청의 경제통계에 의한 이러한 분류는 SCM 측정의 맥락에 있어 통계적 분석의 기초가 됨
- 매출액과 자본금 역시 업종에 따라 규모기준이 달라짐. 매출액기준의 경우 출판, 정보서비스, 사회복지사업등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수도사업 등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교육서비스업 등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매출액 5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본금 기준의 경우 제조업은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등은 3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함

- 본 보고서의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들은 모두 제조업이었음.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기준이 없으므로 대기업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고 분석을 전개함
- 다음으로 기업의 자료요구 처리과정에 동원되는 정보처리 자동화(Digital solutions)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들의 행정처리 과정(데이터 입력-변환-결과출력-전송)이 전적으로 전산화된 자동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한 과정이 수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처리시간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이를 따로 구분함
  - 그러나 자료요구에 따른 행정처리의 일부과정이 전산화된 경우나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요구된 자료를 출력하여 비 전자적 수단인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은 전적으로 자동화된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과정으로 분류
  - 이에 반해, 자료요구 처리과정이 전적으로 수동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동으로 분류하여 정보처리 자동화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처리시간의 차이를 감안하고 측정의 동질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정보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하나의 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외부업체에 의뢰할 경우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정보의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분이 필요

- 산업분류도 하나의 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산업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산업 특유의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 부록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표 참조할 수 있는데 분석대상 규제의 적용범위에 비해 KSIC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비율에 대한 정보와 업체 수 등을 제공해야 함

### 제 2 절 단계별 측정 내용

- 국제표준모형에서는 측정단계를 4개 국면(phase), 15단계(step)로 구분하고, 행정연구원 매뉴얼에서는 측정단계를 4개 단계, 14스텝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일부 통합하여 중소기업연구원의 측정단계와 유사하게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비용변수확인,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검증 및 표준화,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의 6개 단계로 설명함

<그림 4> 행정부담 측정단계

	측정절차	주요사항
1단계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목적 확인</li> <li>•정보의무/자료요구/행정행동 분석</li> <li>•대상기업그룹 확정 및 구분</li> </ul>
2단계	비용변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량변수(모집단, 빈도수 확인)</li> </ul>
3단계	조사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조사지 설계</li> </ul>
4단계	조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대상 설문조사 실시</li> </ul>
5단계	자료검증 및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결과 검증</li> <li>•표준화 테스트</li> <li>•전문가평가 실시</li> <li>•기업의 일상적 활동 구분</li> </ul>
6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서 작성</li> <li>•데이터의 DH화</li> </ul>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기업행정부담비용 시범측정(2007.12)’에서 변형

## I. 1단계 : 규제목록,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 1. 규제목록

□ 행정부담은 규제에 의해 부과되는 정보의무이므로 규제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정보의무를 파악하기 위한 선결작업으로 요청됨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법에서 나타나는 규제의 경우 대부분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권장됨

<그림 5> 등록규제검색



※ 출처: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 → 규제등록현황 → 행정규제검색

- 또한, 이 중 규제가 신설되었으나 시행 전인 규제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정보의무와 관련 없는 규제는 최종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함 단, 정보의무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정보의무와 관련 없는 규제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정보의무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규제를 파악함
- 이상과 같은 조사에서 일차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등록규제 총 15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표 17>). 단, 여기에서의 유형은 정보의무에서 지정하는 유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규제를 숙독하여 정보의무를 분류하여야 함

<표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등록규제

규제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현행규제시행일
1480000-아256-011-0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시험	2008/06/25
1480000-아256-015-02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증명	2008/06/25
1480000-아256-013-02	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	승인	2009/02/10
1480000-아256-012-01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재계획 수립	제출의무	2008/06/28
1480000-아256-014-01	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기준설정	2007/12/27
1480000-아256-001-01	환각물질의 흡입·판매 또는 공여금지	금지	2008/06/28
1480000-아256-005-01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검사	2008/06/28
1480000-아256-003-01	유독물의 수입신고	신고의무	2008/06/28

규제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현행규제시행일
1480000-아256-004-01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신고의무	2008/06/28
1480000-아256-006-01	유독물 표시의무	기준설정	2008/06/28
1480000-아256-008-0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등	허가	2008/06/28
1480000-아256-002-0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제조금지 등	금지	2008/06/28
1480000-아256-009-01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 등	허가	2008/06/28
1480000-아256-010-01	유독물영업 등록 및 변경등록(또는 신고)	등록의무	2008/06/28
1480000-아256-007-00	시험기관의 지정 등	기준설정	2008/06/28

- 앞서 지적했듯이, 등록규제가 정보의무를 포함하는 해당 법령상의 모든 규제를 포괄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등록규제 외의 조항에서 규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아야 함
- 미등록규제라 하더라도 기업에게 행정부담을 부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등록규제 외의 규제의 경우, 의무자가 기업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항만을 통해 그 의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특히, 이러한 미등록규제는 자발적 규제의 외형을 갖고 있어 일선부처에서는 이를 규제로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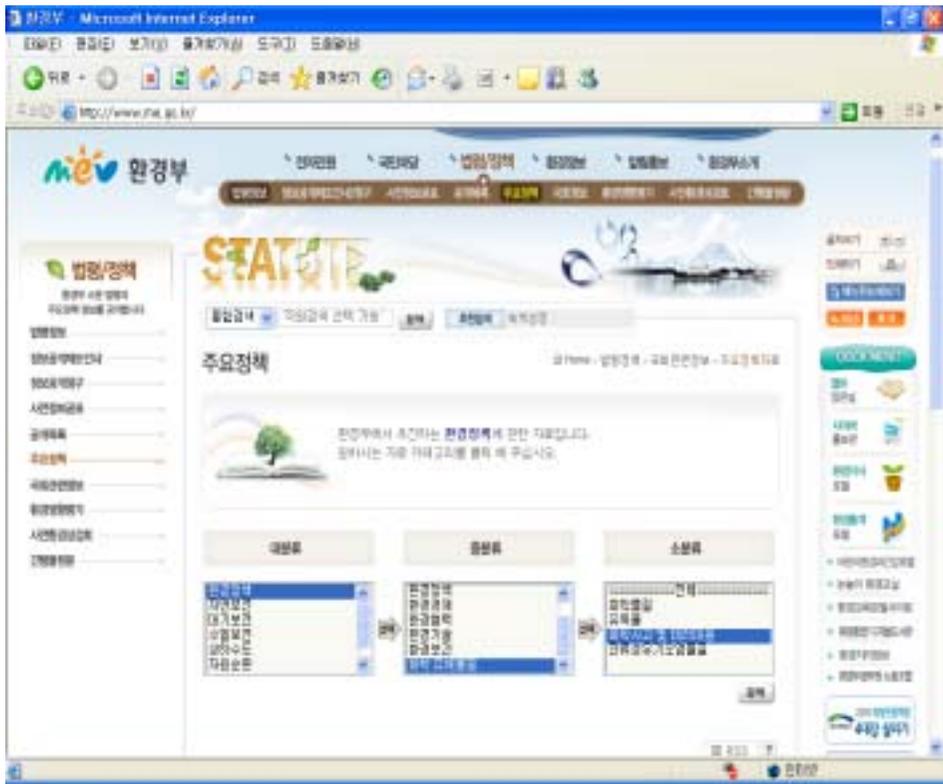
##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연관 제도(등록규제 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연관된 제도로써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개정 중),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 등을 들 수 있음.

- 해당 제도는 중앙정부의 홈페이지의 주요정책 부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환경부의 경우 ‘법령/정책’ - ‘주요제도’에서 관련정책과 관련된 고시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내용을 알 수 있음

<그림 6> 등록규제 외 제도의 검색



※ 출처: 환경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주요정책

### (3) 규제카드

- 뒤에 작성할 자료요구 보기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각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 담당부서,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규제카드를 작성함. 규제카드의 규제내용의 경우 정보의무에 해당하

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법조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함

- 규제카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등록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등록규제의 경우 규정과 제도 개요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하여야 함

<표 18> 규제카드 예시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15-02		규제 사무명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9조, 제51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li> </ul> </li> <li>○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유통량과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미제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li> </ul>			

## 2. 정보의무의 확인

- 정보의무는 행정기관이 법령 등에 의거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정보를 서면, 전산, 기타 다른 형태로 행정기관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 갱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 등록규제의 경우 위의 규제카드에 제시해놓은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검색에서 도출된 등록규제의 규제내용과 관련법규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정보의무를 확인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규제내용과 정보의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을 직접 살펴보아야 함

- 미등록규제의 경우 행정규칙 상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하여 이를 적시하여야 함. 법령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없는 것이 실제 제도 운영상에 있어 정보의무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함
- 규제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정보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보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음. 정보의무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정보의무유형(IO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200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1) 인허가신청, (2) 신고, (3) 등록, (4) 보고, (5) 조사 및 감사, (6) 서류비치 및 갱신, (7)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8)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8가지로 분류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도 이 유형분류에 따름

<표 19> 정보의무 도출의 예시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제 9 조 (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b>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b>(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b>확인</b>(이하 “화학물질 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b>제출</b>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화학물질</li> <li>2. 유독물</li> <li>3. 관찰물질</li> <li>4. 취급제한·금지물질</li> </ol> <p>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b>자료를 첨부</b>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b>증명을 신청</b>할 수 있다.</p>	<p>화학물질 확인 및 보고</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51조 (자료의 보호)</b> ① <b>환경부장관</b>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b>환경부장관</b>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삭제</p> <p>④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 위의 정보의무 도출의 예시에 해당하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확인 명세서 제출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와 제51조의 적용을 받는 것을 규제카드로부터 확인할 수 있음. 각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의 경우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하는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되어있으나 제51조의 경우 제공된 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정보제공의무의 부과와는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0> 규제에 따른 정보의무

등록규제 및 정보의무명	정보의무유형
<p>규제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p> <p>정보의무 1-1. 신규화학물질제조자 등의 유해성심사의무</p>	<p>(조사 및 감사)</p>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등록규제 및 정보의무명	정보의무유형
규제2.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정보의무 2-1. 화학물질 확인의무	(조사 및 감사)
규제3. 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 정보의무 3-1.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승인 정보의무 3-2.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 변경승인 정보의무 3-3. 유독물관리자의 지도·감독의무	(인허가신청) (인허가신청)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규제4.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정보의무 4-1.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정보의무 4-2. 자체방제계획의 인근주민에의 사전 공고 정보의무 4-3.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신고	(보고)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신고)
규제5. 유독물의 수입신고 정보의무 5-1. 유독물 수입신고 정보의무 5-2. 유독물 수입의 변경신고	(신고) (신고)
규제6.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정보의무 6-1.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정보의무 6-2. 관찰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	(신고) (신고)
규제7. 유독물 표시의무 정보의무 7-1. 유독물 용기 등에의 유독물에 관한 표시의무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규제8.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등 정보의무 8-1.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정보의무 8-2. 취급금지물질의 예외적 수입허가 정보의무 8-3.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 수입변경 허가 정보의무 8-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허가 정보의무 8-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변경허가	(인허가신청) (인허가신청) (인허가신청) (인허가신청) (인허가신청)

등록규제 및 정보의무명	정보의무유형
규제9.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 등 정보의무 9-1. 취급제한물질영업허가 정보의무 9-2. 취급금지물질의 영업허가 정보의무 9-3.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정보의무 9-4.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의무 정보의무 9-5. 폐업 및 휴업신고 정보의무 9-6. 서류의 기록·보존의무 규제10. 유독물영업 등록 및 변경등록(또는 신고) 정보의무 10-1. 유독물영업의 등록 정보의무 10-2.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인허가신청) (인허가신청) (인허가신청) (보고) (신고) (서류비치 및 갱신) (등록) (등록)
미등록규제 및 정보의무명	정보의무유형
규제11. 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정보의무 11-1. 유해화학물질배출량 조사표 작성 규제12. 유해화학물질사고보고 정보의무 12-1. 유해화학물질 사고보고	(조사 및 감사) (보고)

&lt;표 21&gt; 정보의무유형에 따른 정보의무분류

정보의무 유형	규 제	정 보 의 무
인허가 신청	3.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	3-1.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승인
		3-2.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 변경승인
	8.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등	8-1.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8-2.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
		8-3.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변경허가
	8-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허가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정보의무 유형	규 제	정 보 의 무
	9.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허가 등	8-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변경허가
		9-1. 취급제한물질의 영업허가
		9-2. 취급금지물질의 영업허가
		9-3.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 변경허가 또는 신고
신고	4.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재계획수립	4-3.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신고
	5.유독물 수입신고	5-1. 유독물 수입신고
		5-2. 유독물 수입 변경신고
	6.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6-1.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6-2. 관찰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		
9.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허가 등	9-5. 폐업 및 휴업신고	
	10.유독물영업 등록 및 변경등록(또는 신고)	10-1. 유독물영업의 등록
		10-2.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또는 신고)
보고	4.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재계획수립	4-1. 자체방재계획의 수립 및 제출
	9.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허가 등	9-4.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의무
	12.유해화학물질사고의 보고	12-1. 유해화학물질사고의 보고
조사 및 감사	1.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1-1. 신규유해물질제조자 등의 유해성 심사의무
	2.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2-1. 화학물질 확인의무
	11.화학물질배출량조사	11-1. 화학물질배출량조사표 작성의무
서류비치 및 갱신	9.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허가 등	9-6. 서류의 기록, 보존의무
제3자를 위한	7.유독물표시의무	7-1. 유독물 용기 등에의 유독물에 관한 표시의무

정보의무 유형	규 제	정 보 의 무
정보표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3.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동승인	3-3. 유독물관리자의 지도감독의무
	4.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제계획수립	4-2. 지체방제계획의 인근주민에의 사전공고

- 정보의무유형에 따라 규제와 정보의무를 다시 나눈 결과를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인허가신청에 따른 정보의무가 가장 많고, 신고, 보고와 함께 조사 및 감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됨. 조사 및 감사의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의 경우, 실질적 준수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정부담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 3. 자료요구의 내용

- 정보의무분류가 완성된 이후에, 각 정보의무에 요청되는 자료요구를 확인함. 등록규제의 경우, 자료요구는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됨. 미등록규제의 자료요구는 각 사안별로 시행규칙과 실제 제도운영 상 요구자료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음.7)
- 아래의 <표 22>에서는 위 <표 21>에서 제시된 규제와 정보의무에 따른 각각의 자료요구를 파악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보의무 3-1의 경우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 외 5개의 자료요구가 존재하며, 정보의무 11-1의 경우는 배출량조사표라는 1개의 자료

7) 각 정보의무별 근거법률 및 자료요구의 내용을 담은 보기카드 부록에 수록

요구가 존재함

<표 22> 정보의무유형별 분류의 자료요구

정보의무 유형	규제	정보의무	자 료 요 구
인허가 신청	3	3-1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공동활용계획서 -첨부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첨부3.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첨부4. 개별업소 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첨부5.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3-2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8	8-1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
		8-2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
		8-3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허가증 원본
		8-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수출통보서 첨부2.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3. 수출자책임보증서
		8-5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수출승인서 원본

정보의무 유형	규제	정보 의무	자 료 요 구
	9	9-1	<p>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p> <p>첨부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p> <p>첨부2.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명세서</p> <p>첨부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지계획을 첨부한다.</p> <p>첨부4. 취급제한물질의 용도</p>
		9-2	<p>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p> <p>첨부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p> <p>첨부2.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명세서</p> <p>첨부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지계획을 첨부한다.</p> <p>첨부4. 취급제한물질의 용도</p>
		9-3	<p>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p> <p>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첨부2. 허가증 원본</p>
신고	4	4-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5	5-1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
		5-2	<p>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p> <p>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첨부2. 신고확인증원본</p>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정보의무 유형	규제	정보의무	자 료 요 구
	6	6-1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
		6-2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 첨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신고확인증 원본
	9	9-5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 첨부1. 등록증 원본 첨부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
등록	10	10-1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첨부2.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첨부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 제 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지계획) 첨부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첨부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10-2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보의무 유형	규제	정보의무	자 료 요 구
			첨부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보고	4	4-1	자체방제계획(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 방제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 사고 시 응급 조치계획 /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疏散計劃) /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9	9-4	-별지 제40호 서식의 연간실적보고서
	12	12-1	-재해사고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원인
조사 및 감사	1	1-1	<p>(1) 유해성 심사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li> <li>-첨부1. 주요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li> <li>-첨부2. 급성독성시험성적서</li> <li>-첨부3. 유전독성 시험성적서</li> <li>-첨부4. 분해성 시험성적서</li> <li>-첨부5.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li> <li>-첨부6.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li> <li>-첨부7.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li> <li>-첨부8.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li> <li>-첨부9. 눈자극성 시험성적서</li> <li>-첨부10.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li> <li>-첨부11.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li> <li>-첨부12.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li> </ul> <p>(2) 유해성 심사 면제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li> </ul>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정보의무 유형	규제	정보의무	자 료 요 구
			-첨부 1. 성분명세서 -첨부 2. 사용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고분자화합물의 성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3) 자료제출 요구 또는 명령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음 1. 취급 및 보관 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 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자료((1) 유해성 심사 신청에서의 첨부1~첨부10)
	2	2-1	(1)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제출(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 (2)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11	11-1	배출량조사표
서류비치 및 갱신	9	9-6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7	7-1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3	3-3	유독물 취급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정보
	4	4-2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사고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 사고물질에 노출시 응

정보의무 유형	규제	정보 의무	자 료 요 구
			급조치요령 /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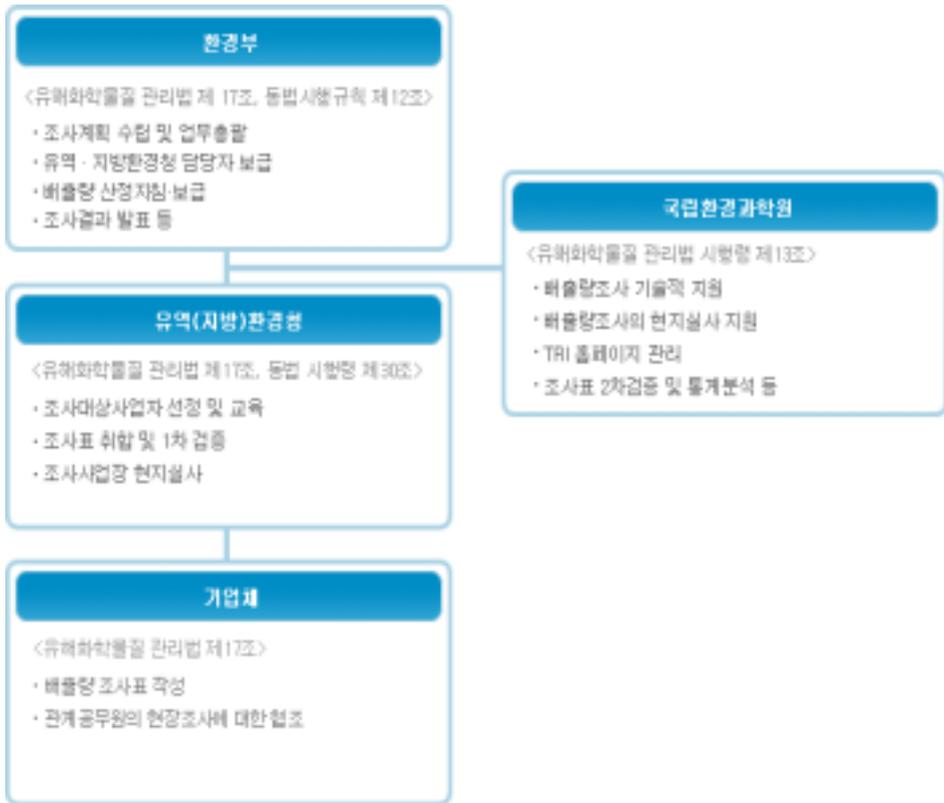
#### 4. 시범측정 대상 정보의무의 선정 - 정보의무 11-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 주어진 기간 내에 총 12개의 규제와 총 28개의 정보의무를 모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기업체들이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량 제출의무를 대상으로 시범측정을 실시함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1996년 OECD가입에 의해 요구된 제도로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원료 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OECD의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규정, 미국 (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캐나다(NPRI : National Pollutant Release Inventory), 영국(Polltion Inventory)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한국의 경우 2000년에 석유정제와 화학의 2개 업종의 199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어왔음
- 본 제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환경부고시 제2008-1호('08.1.10)를 법적근거로 하여 시행됨.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조사의무자가 기업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보면 기

업에 배출량조사표 작성을 지시하고 있음

- 즉, 배출량조사표의 작성은 기업의 정보의무가 됨. 이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 7> 배출량조사제도의 체계에서도 알 수 있음

<그림 7> 배출량조사제도의 체계



※ 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TRI조사제도<sup>8)</sup>

- 배출량조사제도는 법에서 조사의무가 부여된 의무자가 기업이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의무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부담비용을

8) 배출량 조사제도

측정할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시간과 비용이 제약된 상황 하에서 자료요구가 정보의무와 일치하여 자료요구 각각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취합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간단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도 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임
  - 하나의 정보의무에 대응하는 자료요구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들이 묶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요구가 복수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보의무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더 합리적일 수 있음

### 5. 행정활동의 분석

- 행정활동은 국가, 지역, 산업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음. 행정활동을 세분할수록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내용이 복잡해져 설문응답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조합이 요구됨

구분	현행(매체별 관리)	배출량조사제도(통합관리)
관리목적	매체별 오염물질의 저감	환경용량기반의 수용체중심 통합관리
관리대상 화학물질	수질(수질환경보전법): 페놀등 40종 대기(대기환경보전법): 벤젠 등 61종 폐기물(폐기물관리법): 납 등 36종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취급제한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관리방법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로 별도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조, 수입 하거나 판매, 취급하는 원료물질 관리	사업장별 화학물질배출량 통합관리
관리범위	일정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심으로 관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을 총 체적으로 관리
관리방안	지도 단속 등 강제수단 위주	배출량 공개 등으로 사업자 자율저감 유도

- 따라서 본 보고서의 경우 행정활동은 정보의무에 의한 자료요구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표준행정활동 16가지를 유사한 활동으로 묶은 7가지의 행정활동을 기준으로 측정함
- 각 행정활동에 드는 비용의 측정이 행정부담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기능

<표 23> 행정활동내역 조사표

구분	활동내역		A	B	C
	표준행정활동	측정을 위한 행정활동	담당자	담당자 평균연봉 (만원)	시간 (h)
①	정보제공의무 숙지	정보제공의무 숙지			
	법정요구사항에 대한 훈련				
②	정보 검색	관련정보와 수치 수집과 평가			
	평가				
③	계산	수치의 준비(계산과 보고, 검토와 수정을 포함)			
	수치의 제시				
	검토				
	수정				
④	기재사항의 작성	보고(기술, 복사, 파일링, 배포, 자료 제출)			
	복사,배분, 서류정리 등				
	정보의 보고와 제출				
⑤	정산/지불 등	비용지불 및 결제			
⑥	내부회의	내부회의 개최(회의주관자만을 기준으로 기재)			
	외부회의				
⑦	정부당국에 의한 감사(감찰)	조사(감사인 주관 회의참석, 감사 수검준비 및 이행, 시			
	정부당국에 의한				

	감사결과로부터의 시정	정조치 결과보고 등)			
⑧	기타( )				
합 계					

## 6. 시범측정 대상 정보의무에 따른 대상기업그룹의 확정 및 구분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3개 업종의 3,012개 사업장에서 배출·이동량 조사표 11,391개를 제출하였음. 본 정보의무측정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함
  - 화학물질배출량조사의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6개 업종,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자일렌 등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10톤 이상 제조·사용한 3,012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07년에 배출·이동·처리한 당해 화학물질
  - 조사내용은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제조·사용)량과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화학물질 양임
- 측정되는 정보의무가 많은 경우, 정보의무별로 모집단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각 정보의무별 모집단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함. 단, 본 보고서의 경우 시범측정으로 측정되는 정보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단계 2. 비용변수의 확인에서 서술

## II. 2단계 : 비용변수확인 - 수량변수의 도출

- 총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수량변수로서 해당 정보의무가 적용되

- 는 업체의 업종, 규모, 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요청됨
- 본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경우, 3,012개의 사업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 기업수는 3,012개이고 빈도수는 1년에 1회임
- 따라서 수량변수는  $3,012 \times 1 = 3,012$ 로 나타남
- 정보의무가 적용되는 업체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26개 업종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기업분류는 배출량조사표에 의해 공개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300억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 300억 미만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였음.
  - 배출량조사기업 3,012중 49.14%인 1480 업체가 대기업, 나머지 50.86%를 중소기업 1532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조사를 위해 선정된 서울소재 41개 사업체의 경우 16개의 대기업과 25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었음

<표 24> 업종별<sup>9)</sup> 조사사업장 현황

업 종	사업장(개소)	업 종	사업장(개소)
농업	0	금융업	0
임업	0	보험업	0
어업	0	부동산 및 임대업	0
광업	3	사업서비스업	73
제조업	2,819	공공행정 및	0

9)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을 세분한 33종의 업종별 조사사업장현황을 제시함. 해당 표는 부록5에 제시하고 있으며, 33종의 업종에서 기타서비스업, 하수처리 관련 서비스업, 수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은 운수업으로, 수도사업과 전기, 가스 및 증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전문직별 공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23개 업종은 제조업으로 분류함

업 종	사업장(개소)	업 종	사업장(개소)
		사회보장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8	교육서비스업	0
건설업	3	보건업	0
도매업	1	사회복지업	0
소매업	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0
숙박업	0	개인서비스업	0
음식점업	0	가사서비스업	0
운수업	5	국제 및 외국기관	0
통신업	0	기타	0
		총계(26개 업종)	3,012

- 총 3,012개 사업장에서 제조업이 9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이 3.59%, 사업서비스업이 2.42%를 차지하고 있음.

□ 기 타

- 2007년도 보고 사업장수는 33개 업종 3,012개소로 전년보다 243개소 증가함(<표 25>)

<표 25> 연도별 조사대상 내역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조사년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보고업종수	화학 등 2종	화학 등 18종	화학 등 19종	화학 등 23종	화학 등 26종	화학 등 33종	화학 등 32종	화학 등 33종	화학 등 33종
보고물질수 (조사기준)	65종 (80종)	65종 (80종)	116종 (160종)	146종 (240종)	148종 (240종)	218종 (388종)	223종 (388종)	222종 (388종)	219종 (388종)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1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보고사업장수	156	529	1,023	1,199	1,384	2,892	2,741	2,769	3,012

- 3,012개 사업장 중에서 경기도가 784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356개 사업장, 경상북도 300개 사업장 순으로 보고됨 (<표 26>)

<표 26> 연도별 조사대상 내역 지역별 조사사업장 분포

구 분	합계	경기	경남	경북	충남	대구	인천	충북	울산	부산	전북	전남	대전	광주	서울	강원	제주
사업장 (개소)	3,012	784	356	300	208	201	197	192	175	156	140	100	65	55	41	37	5
화학물질 (종)	219	152	90	96	102	65	85	77	140	63	117	102	68	43	20	31	5

### Ⅲ. 3단계 : 조사준비

- 조사는 가격변수측정과 기업분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조사 내용은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 규모, 해당업무이행횟수, 행정활동비용, 취득비용, 외부용역비용, 간접비용, 일상행정비용인지 여부의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부가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조사대상은 배출량조사기업 총 3012개 중, 서울 소재 사업장을 보유한 41개 기업으로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300억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 300억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여 기업을 분류하였음

&lt;표 27&gt; 설문대상업체

No	보고대상년도	업 체 명	연간매출액 (백만원)
1	2007	(주)ABB코리아	240,373
2	2007	씨제이제일제당(주)김포공장	200,000
3	2007	삼화인쇄(주)	50,000
4	2007	(주)교학사	66,000
5	2007	국도화학주식회사	388,343
6	2007	한국후지필름주식회사	135,666
7	2007	(주)파이컴	69,002
8	2007	한국TDK(주)	161,600
9	2007	롯데알미늄(주)서울공장	130,000
10	2007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동부지사	56,615
11	2007	한국중부발전(주)서울화력발전소	157,388
12	2007	덴소풍성(주)	406,657
13	2007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145,300
14	2007	농협중앙회서울축산물공판장	52,521
15	2007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서부지사	150,200
16	2007	백광산업주식회사서울지점	30,000
17	2007	(주)삼화출판사	10,000
18	2007	(주)삼보에이팩	16,500
19	2007	조광출판인쇄(주)	27,872
20	2007	(주)프린피아	18,300
21	2007	삼성인쇄주식회사	6,200
22	2007	(주)한진피앤씨	28,500
23	2007	(주)신한정밀유브이	8,740
24	2007	(주)영일프레스전	12,000
25	2007	동광문화인쇄(주)	12,352
26	2007	네오프린텍(주)	10,000
27	2007	평화당인쇄주식회사	8,790
28	2007	강남자원회수시설	0
29	2007	암사정수사업소	0
30	2007	구의아리수정수센터	0

No	보고대상년도	업 체 명	연간매출액 (백만원)
31	2007	덕성엠앤피(주)	4,000
32	2007	신영섬유(주)	1,400
33	2007	성호전자주식회사	0
34	2007	노원자원회수시설	0
35	2007	마포자원회수시설	3,500
36	2007	정문사문화(주)	2,000
37	2007	삼신문화사	3,800
38	200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0
39	2007	대도도금(주)	2,000
40	2007	양천자원회수시설	0
41	2007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0

#### IV. 4단계 : 조사실시

#####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 선정 정보의무에 대해 업종,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조사 실시
  - 조사방법: 팩스, 전화조사 병행
  - 조사기간: 7월 01일 ~ 7월 10일
  -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단

##### □ 조사표본 기업의 개요

- 기업규모
  - 3012개 모집단 중 설문대상업체 선정은 배출량조사의무가 있는 서울소재 41개 업체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 응답기업은 총 6개였으며, 대, 중소기업 구성은 대기업 50%, 중소기업50%였음
- 업종구성
  - 업종은 100% 제조업으로 구성됨. 모집단을 볼 때, 제조업이 약 95%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어 제조업만을 설문대상으로 삼아

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짐

○ 종업원 수

- 종업원수의 경우 10-3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16.7%, 100-200명 미만인 기업이 50%, 200-300명 미만이 16.7%, 300명 이상이 16.7%이었음

### V. 5단계 : 자료검증 및 표준화

- 기업마다 정보의무에 따른 행정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부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따라서 일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이 표본에는 정상적 효율기업 외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값을 제외해 주어야 함.
- 표준화 방법으로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소요시간의 경우 ‘최빈값이 있을 경우 최빈값, 최빈값이 없을 경우에는 최소값이 최대값의 2배 이내가 될 때까지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하고 2배 범위내의 값들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하였고, 인건비의 경우 소요시간과 같은 표준화방법을 사용하면서 2배 대신 3배의 값을 사용하였음
- 그러나 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함. 따라서 두드러지는 비효율기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만으로 평균값을 구해 이를 대푯값으로 취하는 방법을 사용함
- 비효율기업은 정보의무에 대한 각 기업의 총소요시간을 비교하여, 기업분류 내에서 중간값(median)과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

업을 상정함. 이에 따라 총 270시간을 소요하였다고 응답한 기업3을 제외한 총 5개 기업만으로 계산을 실시하게 됨

<표 28> 각 기업의 총소요시간

No	구 분	매출액(백만 원)	총 소요시간(h <sup>10</sup> )	중간값(h)	비효율기업
기업1	대기업	69,000	6	$(6+12)/2 = 9$	○
기업2	대기업	66,000	5.5		
기업3	대기업	388,343	270		
기업4	대기업	35,000	12	$(28+32)/2 = 30$	
기업5	중소기업	2,500	28		
기업6	중소기업	20,600	32		

□ 내부비용의 계산 1 -소요시간의 계산

- 소요시간 : 정보의무를 구성하는 행정활동별로 소요시간을 조사하여, 하나의 행정활동에 대한 평균소요시간을 구함
- 예를 들어, 행정활동 1의 경우 대기업그룹에서 소요시간은 각각 2시간, 1시간, 1시간으로 이 값의 평균을 구하면, 1.33이 도출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29> 기업분류별 평균소요시간의 도출

구 분	No	소요시간(h)	평균소요시간의 계산	결과(h)
대기업	기업1	2	$(2+1+1)/3$	1.33
	기업2	1		
	기업4	1		
중소기업	기업5	10	$(10+24)/2$	17
	기업6	24		

□ 내부비용의 계산 2- 임금률 및 인건비 계산

- 2007년 제조업의 월별 평균 근로시간의 연간 합계치(2,362 h)를 기준으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각 해당정보의무 행정활

10) 소요시간(h)은 1시간을 1로 본 값으로 30분은 0.5h로 나타냄

동 내역별 연봉에 반영함

- 제조업 30인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유해화학물질배출량 조사의 경우 제조업이 93.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 설문에서도 제조업만이 응답하였고, 유해화학물질배출량 조사가 3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표 30> 연간 제조업 3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기준

월	총근로시간(h)	정상근로시간(h)	초과근로시간(h)
1	204.5	170.4	34.1
2	182.5	151.5	31.0
3	202.8	166.3	36.5
4	202.3	168.3	34.0
5	203.2	167.1	36.1
6	197.6	162.1	35.5
7	196.0	161.8	34.2
8	191.7	156.9	34.8
9	176.8	141.9	34.9
10	206.1	168.1	38.0
11	206.3	172.1	34.2
12	192.2	158.1	34.1
연간 계	2362.0	1944.6	417.4

※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앞서 제시한대로, 시간당 임금률은 응답계층의 평균연봉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도출함. 시간당 임금률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31> 기업분류별 시간당 임금률의 도출

구 분	No	연봉(원)	평균연봉(원)	연간근로시간(h)	시간당 임금률(원/h)
대기업	기업1 <sup>1)</sup>	24,000,000	24,000,000	2,362	10,160.88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기업2	18,000,000			
	기업4	30,000,000			
중소 기업	기업5	35,000,000	35,500,000	2,362	15,029.64
	기업6	36,000,000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은 관련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나 부서장이 직접 담당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위 결과에 따라, 대기업그룹에 속하는 한 기업의 행정활동 1에 소요된 인건비를 계산하면 (평균소요시간\*시간당 임금률)로부터  $1.33 * 10,160.88 = 13,513.97$ (원)을 구할 수 있음

□ 내부비용의 계산 3 - 기타 회의참가자

- 행정활동 6의 회의개최에서는 주관자만을 계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타 회의참가자에 의한 행정비용도 계산해주어야 함. 이때 기타회의참가자가 회사 내부사람인 경우에는 내부비용에, 외부사람인 경우에는 외부비용(용역)에 포함시켜주어야 함
- 이 경우 인건비의 계산법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 기타회의참가자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기업2뿐이었으며, 모두 내부인이었음

<표 32> 회의참가1

구분	No	소요 시간	연봉(원)	평균연봉(원)	연간근로 시간(h)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대기업	기업1	0	0	6,000,000	2,362	2540.22	2540.22
	기업2	1	18,000,000				

11) 기업1의 경우 연봉정보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직급의 응답도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같은 기업분류의 평균연봉을 해당기업의 연봉으로 봄

	기업4	0	0				
중소 기업	기업5	0	0	0	2,362	0	0
	기업6	0	0				

□ 내부비용의 계산 4 - 간접비

- 표준비용모형에 적용되는 간접경비율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적용하는 간접비율을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간접비율을 정하는 과정을 제시하도록 함

<표 33> 기업분류별 간접비율의 도출

구 분	No	간접비율	간접비율의 계산	간접비율 평균
대기업	기업1	0.20	$(0.20+0+0.25)/3$	0.15
	기업2	0		
	기업4	0.25		
중소기업	기업5	0	$(0+0.3)/2$	0.15
	기업6	0.3		

- 간접비율 평균값이 도출되면 간접비는 (인건비\*간접비율 평균)을 통해서 도출함. 따라서 대기업 분류에 속하는 어느 한 기업의 행정활동 1에 소요된 간접비는  $13,513.97*0.15=2027.10$ (원)으로 도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외부비용의 계산

- 외부비용은 행정활동 각각에 대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의 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된 외부용역비를 의미함. 외부용역비는 다시 평균연봉을 연간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도출함
- 본 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의 경우 외부비용은 조사되지 않았음

□ 취득비용의 계산

<표 34> 취득비용의 계산

구 분	No	우편비 (원)	인쇄비 (원)	기계 (원)	소프트웨어 (원)	기타(설비) (원)	취득비소계 (원)	취득비평균 (원)
대기업	기업1	0	0	0	0	0	0	866.67
	기업2	0	0	0	0	0	0	
	기업4	2,000	100	0	500	0	2,600	
중소 기업	기업5	0	0	0	0	0	0	0
	기업6	0	0	0	0	0	0	

- 단, 취득비용의 경우 무응답이 많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었음

□ 각 행정활동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lt;표 35&gt; 행정활동 1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2	1.33	24,000	24,000	10,160.88	13,513.97	0.15	2027.10	15,541.07
	기업2	1		18,000						
	기업4	1		30,000						
중소 기업	기업5	10	17	35,000	35,500	15,029.64	255,503.88	0.15	38325.58	293,829.46
	기업6	24		36,000						

&lt;표 36&gt; 행정활동 2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1	0.67	24,000	24,000	10,160.88	6807.79	0.15	1021.17	7828.96
	기업2	0		18,000						
	기업4	1		30,000						
중소 기업	기업5	0	0	35,000	35,500	15,029.64	0	0.15	0	0
	기업6	0		36,000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표 37> 행정활동 3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1	3.33	24,000	24,000	10,160.88	33,835.73	0.15	5075.36	38,911.09
	기업2	1		18,000						
	기업4	8		30,000						
중소 기업	기업5	0	0	35,000	35,500	15,029.64	0	0.15	0	0
	기업6	0		36,000						

<표 38> 행정활동 4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2	1	24,000	24,000	10,160.88	10,160.88	0.15	1,524.13	11,645.01
	기업2	0		18,000						
	기업4	1		30,000						
중소 기업	기업5	10	9	35,000	35,500	15,029.64	135,266.76	0.15	20,290.01	155,556.77

	기업6	8		36,000						
--	-----	---	--	--------	--	--	--	--	--	--

&lt;표 39&gt; 행정활동 5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0	0.17	24,000	24,000	10,160.88	1727.35	0.15	259.10	1986.45
	기업2	0.5		18,000						
	기업4	0		30,000						
중소 기업	기업5	0	0	35,000	35,500	15,029.64	0	0.15	0	0
	기업6	0		36,000						

&lt;표 40&gt; 행정활동 6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0	0.33	24,000	24,000	10,160.88	3353.09	0.15	502.96	3856.05
	기업2	1		18,000						
	기업4	0		30,000						
중소 기업	기업5	0	0	35,000	35,500	15,029.64	0	0.15	0	0
	기업6	0		36,000						

<표 41> 행정활동 7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0	0.33	24,000	24,000	10,160.88	3,353.09	0.15	502.96	3,856.05
	기업2	0		18,000						
	기업4	1		30,000						
중소 기업	기업5	8	4	35,000	35,500	15,029.64	60,118.56	0.15	9,017.78	69,136.34
	기업6	0		36,000						

<표 42> 회의참가 1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제 2 절 단계별 측정 내용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0	0.33	0	6,000	2540.22	838.27	0.15	125.74	964.01
	기업2	1		18,000						
	기업4	0		0						
중소 기업	기업5	0	0	0	0	0	0	0.15	0	0
	기업6	0		0						

<표 43> 회의참가 2에 대한 내부비용의 계산

구분	No	소요 시간 (h)	평균소 요시간 (h)	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 비율	간접비 (원)	내부비용 (원)
대기업	기업1	0	0.33	0	10,000	4,233.70	1,397.12	0.15	209.57	1,606.69
	기업2	1		30,000						
	기업4	0		0						
중소 기업	기업5	0	0	0	0	0	0	0.15	0	0
	기업6	0		0						

<표 44>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정보의무에 따른 행정부담의 계산 1 : 서울지역 41개 사업장의 경우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구분	행정 활동 No.	수량변수				가격변수					외부 비용 (원)	취득 비용 (원)	총가격변수 (원)	총행정부담 (원)
		대상기업	빈도수	연간횟수	최종값	내부비용								
						평균 소요 시간 (h)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비 (원)	내부 비용 (원)				
대 기 업	1	16	1년 1회	16	1.33	10,160.88	13,513.97	2,027.10	15,541.07	0	866.67	87,062.05	<u>1,392,992.80</u>	
	2				0.67	10,160.88	6,807.79	1,021.17	7,828.96					
	3				3.33	10,160.88	33,835.73	5,075.36	38,911.09					
	4				1.00	10,160.88	10,160.88	1,524.13	11,645.01					
	5				0.17	10,160.88	1,727.35	259.10	1,986.45					
	6				0.33	10,160.88	3,353.09	502.96	3,856.05					
	7				0.33	10,160.88	3,353.09	502.96	3,856.05					
	소계				7.16	10,160.88	72,751.90	10,912.78	83,624.68					
	회의1				0.33	2,540.22	838.27	125.74	964.01					
	회의2				0.33	4,233.70	1,397.12	209.57	1,606.69					
	계				총 내부비용									86,195.38
	중 소 기 업				1	25	1년 1회	25	17					15,029.64
2		0	15,029.64	0	0				0					
3		0	15,029.64	0	0				0					
4		9	15,029.64	135,266.76	20,290.01				155,556.77					
5		0	15,029.64	0	0				0					
6		0	15,029.64	0	0				0					
7		4	15,029.64	60,118.56	9,017.78				69,136.34					
계														

구분	행정 활동 No.	수량변수				가격변수					외부 비용 (원)	취득 비용 (원)	총가격변수 (원)	총행정부담 (원)	
		대상 기업	빈도 수	연간 횟수	최종 값	내부비용									
						평균 소요 시간 (h)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비 (원)	내부 비용 (원)					
	소계					30	15,029.64	450,889.20	67,633.37	518,522.57					
	회의1					0	0	0	0	0					
	회의2					0	0	0	0	0					
	계						총 내부비용					518,522.57			
전 체		41	1년 1회		41						604,717.95	0	886.67	605,584.62	<u>14,356,057.05</u>

<표 4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정보의무에 따른 행정부담의 계산 2 : 전국 3,012개 사업장의 경우

구분	행정 활동 No.	수량변수				가격변수					외부 비용 (원)	취득 비용 (원)	총가격변수 (원)	총행정부담 (원)
		대상 기업	빈도 수	연간 횟수	최종 값	내부비용								
						평균 소요 시간(h)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비 (원)	내부 비용				
대 기	1	1480	1년 1회	1480	1.33	10,160.88	13,513.97	2,027.10	15,541.07	0	866.67	87,062.05	<u>128,851,834.00</u>	
	2				0.67	10,160.88	6,807.79	1,021.17	7,828.96					
	3				3.33	10,160.88	33,835.73	5,075.36	38,911.09					

제 2 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구분	행정 활동 No.	수량변수				가격변수						총행정부담 (원)		
		대상 기업	빈도수	연간회수	최종 값	내부비용					외부 비용 (원)		취득 비용 (원)	총가격변수 (원)
						평균 소요 시간(h)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비 (원)	내부 비용				
업	4					1.00	10,160.88	10,160.88	1,524.13	11,645.01				
	5					0.17	10,160.88	1,727.35	259.10	1,986.45				
	6					0.33	10,160.88	3,353.09	502.96	3,856.05				
	7					0.33	10,160.88	3,353.09	502.96	3,856.05				
	소계					7.16	10,160.88	72,751.90	10,912.78	83,624.68				
	회의1					0.33	2,540.22	838.27	125.74	964.01				
	회의2					0.33	4,233.70	1,397.12	209.57	1,606.69				
	계					총 내부비용				<b>86,195.38</b>				
중 소 기 업	1	1532	1년 1회	1532	17	15,029.64	255,503.88	38,325.58	293,829.46	0	0	518,522.57	<u>794,376,577.24</u>	
	2				0	15,029.64	0	0	0					
	3				0	15,029.64	0	0	0					
	4				9	15,029.64	135,266.76	20,290.01	155,556.77					
	5				0	15,029.64	0	0	0					
	6				0	15,029.64	0	0	0					
	7				4	15,029.64	60,118.56	9,017.78	69,136.34					
	소계				30	15,029.64	450,889.20	67,633.37	518,522.57					
	회의1				0	0	0	0	0					

제 2 절 단계별 측정 내용

구분	행정 활동 No.	수량변수				가격변수							총행정부담 (원)		
		대상 기업	빈도 수	연간 횟수	최종 값	내부비용					외부 비용 (원)	취득 비용 (원)		총가격변수 (원)	
						평균 소요 시간(h)	시간당 임금률 (원/h)	인건비 (원)	간접비 (원)	내부 비용					
	회의2					0	0	0	0	0					
	계					총 내부비용					518,522.57				
전 체		3912	1년 1회		3012						604,717.95	0	886.67	605,584.62	<u>923,228,411.24</u>

## VI. 6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에서 배출량조사표라고 하는 자료 요구 하나(=정보의무)에 해당하는 대기업분류에 속하는 기업 하나의 대표적(평균적) 내부비용은 각 행정활동에 대해 15,541.07(원), 7,828.96(원), 38,911.09(원), 11,645.01(원), 1,986.45(원), 3,856.05(원), 3,856.05(원)으로 이를 합하면 83,624.68(원)으로 계산됨.
  - 여기에 다시 기타 회의참가자에 따른 비용을 더해 86,195.38(원)이 내부비용으로 결정됨
  - 대기업분류에서는 외부비용은 없으나 취득비용은 존재함. 따라서 내부비용에 취득비용을 더해준 값이 가격변수로 도출됨. 따라서 가격변수는 87,062.05(원)으로 계산되었음
  - 가격변수가 결정되었으면 여기에 수량변수를 곱하여 행정부담을 계산함. 대기업분류에 속하는 모집단의 수는 서울소재사업장의 경우 16개 기업, 전국사업장에서는 1480개 기업으로 존재. 따라서 이를 곱하면 각각 행정부담의 크기를 도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에서 배출량조사표라고 하는 자료 요구 하나(=정보의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분류에 속하는 기업 하나의 대표적(평균적) 내부비용은 행정활동 1, 4, 7에 대해 각각 293,829.46(원), 155,556.77(원), 69,136.34(원)으로 총 518,522.57(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타 회의참가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총 내부비용이 됨
  - 중소기업분류에서는 외부비용 및 취득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격변수의 값도 동일하게 518,522.57(원)이 됨
  - 가격변수가 결정되었으면 여기에 수량변수를 곱하여 행정부담을 계산함. 중소기업분류에 속하는 모집단의 수는 서울소재사업장의

경우 25개 기업, 전국사업장에서는 1532개 기업으로 존재. 따라서 이를 곱하면 각각 행정부담의 크기를 도출할 수 있음

- 전체 행정부담의 크기는 대기업분류에서 도출된 행정부담의 크기와 중소기업분류에서 도출된 행정부담의 크기를 합해서 계산함. 단, 이 때 구한 값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에 의한 행정부담의 크기이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제에 의한 행정부담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 각각 조사를 실시하여 그 크기를 합하여야 함

## 제 3 장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한 영국과 한국의 행정부담비용 측정사례 비교 및 시사점

### I. 정보의무, 자료요구 및 행정활동 파악

#### 1.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의 식별

- 행정부담비용 측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바로 “환경부 장관은 ...조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과 같이 사업체에 정보제공에 대한 수인의무만을 부여한 경우임.
- 대다수 매뉴얼에서는 정보의무에는 감사, 방문 또는 조사 등에 협조하여 다른 사람이 정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의무에 대한 추정은 수량변수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용이하지 않아 등록규제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전개하기도 함
- 그러나 그 중에서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와 같이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이를 무작정 배제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의미. 따라서 이 부분을 정보의무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가 고민될 필요가 있음
- 즉, 미등록규제 등에 대해서 이를 무시할 것인지, 제도를 통해 접근할 것인지, 법을 통해 접근할 것인지 등에 관해 표준적인 매뉴얼이 작성될 필요가 있음
- 영국 사례에서 보면, 영국에서도 정보의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음

- 나라마다 규제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영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규제의 개념이 서로 달라 정보의무를 구분하는 단위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나의 정보의무가 여러 규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제를 식별하고 이를 정보의무와 자료요구 단위로 구별하는 데에는 규제기관과 측정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자료요구의 식별에서 한국의 경우, 자료요구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실제 측정 상에 있어서 별지서식 하나를 자료요구 하나로 파악하는 등, 영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 이러한 점에 대해 매뉴얼에서 지적해줄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서식은 별도로 항목을 구성해 그 수를 세고, 자료요구를 서식과 정보의무로부터 식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렇게 도출된 자료요구 항목들을 유형화 한 후 이를 다시 행정활동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한다면 질문의 수가 너무 많아 기업이 모두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요구의 유형화를 하지 않고, 정보의무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자료요구는 정보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적시하였음
- 미등록규제 및 행정규칙에 별지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요구됨

## 2. 정보의무의 출처

- 한국의 경우 아직 정보의무의 출처를 고려하여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 이는 영국이 포함된 유럽과 같이 초국적 기

관에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점차 FTA 체결국가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블록화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보의무의 출처를 분류하는 작업이 초기부터 실시되는 것이 향후 추정을 위해서는 요청되는 바임

### 3. 정보의무의 유형화

- 영국에서 실시한 정보의무의 유형화와 중소기업연구원이나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정보의무의 유형화는 다름. 그 중에서는 중복되는 유형도 있으나 각종 신청이나 이의제기 등은 한국에서는 정보의무의 유형화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이의제기와 같은 분류의 경우, 한국에서 이를 정보의무로 파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결국, 정보의무의 유형화는 국가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정보의무의 유형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의무를 식별해야 하는 전문가가 정보의무를 식별하기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
  - 단,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의 ‘국세로 인한 행정비용측정매뉴얼(2008.7)’에 따른 정보의무 유형은 영국의 HMRC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정보의무 유형과 유사하게 만들어짐

### 4. 정보의무가 적용되는 영역

-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대규모로 행정부담을 추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영역에 대한 분류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못함. 현재까지는 주로 소수의 법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시범측정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5. 행정활동의 분류

- 영국의 HMRC 프로젝트에서는 16개의 표준행정활동을 그대로 제시하여 각각 작성하도록 함. 그러나 세세하게 분류될수록 응답자가 응답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묶여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HMRC 프로젝트를 보면, EC Sales List와 같은 조세영역에서는 단지 9개의 행정활동만 발생한 반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영역에서는 15개의 행정활동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영역별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분류를 모두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II. 비용변수 확인단계 비교

- 설문지 상의 응답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존재함. 연봉정보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는 것을 매우 꺼려함
- 따라서 영국의 경우처럼, 연봉정보에 대해 노동통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단, 여전히 담당자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접근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찾아야 하므로 이는 정보의무 수행시 담당자 정보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Ⅲ. 시사점

-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해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나라들이 표준비용모형의 기본적인 산식(수량변수 x 비용변수)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추정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이면에는 표준비용모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이랄 수 있는 행정부담의 추정방법인 표준적 효율기업의 통계적 유의성 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 표준비용모형 자체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각국의 정의,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단위의 구분 등의 차이점과 데이터 검증방식의 임의성 등으로 인해 결과의 표준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문화를 고려할 때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행정부담을 측정할 경우 측정대상이나 규제와 정보의무의 구분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국제적 비교가 어렵든지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네덜란드나 영국의 경우 모두 민간 컨설팅업체가 행정부담을 측정하였는데 측정과정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담측정을 위해 Rambol사가 개발한 동일한 측정 패키지를 사용했음에 주목할 필요

-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측정과정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비교를 더욱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 부처차원에서 본격적인 행정부담 측정을 이루어진다면 측정과정의 오류나 차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 있음
  
-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의 측정은 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에 대한 통일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내용이 표준비용모형에서도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등록규제의 문제가 있어 이러한 미등록 규제 또는 규제이지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로 분류되지 않는 규제영역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매번 측정시마다 자료요구, 행정활동, 정보의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음.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히 미등록규제는 수인의무를 부여한 경우가 많은 바, 이를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정보의무의 정의와 용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보의무를 파악함에 있어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바, 정보의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은 Eim & Ramball(2005)의 연구에서 국가간 비교연구의 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국가의 유사 행정부담과의 비교를 통하여 적절한 행정부담의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음,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체계와 규제를 벤치마킹하여 국가간 행정부담 비교를 통하여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적절한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부  
속

[부록 1] 유럽표준비용모형측정현황(2005.7)<sup>1)</sup>

	NL	CZ	DK	DE	SWE	NO	EST	HU	POL	BE	IT	FR	UK
세금(Tax)													
- 부가가치세 (VAT: excl. invoicing)	Y	P	Y	N	Y	Y	Y	Y	Y	Y	P	N	P
- 소비세 (Excise Duties)	Y	P	Y	N	N	Y	N	N	N	N	N	N	P
- 기타(Other Tax)	Y	P	Y	N	P	P	N	N	N	N	N	N	P
사업 및 경제적 사무 (Business and Economic Affairs)	Y	P	Y	N	N	P	N	N	N	N	N	N	P
통계(Statistics)	Y	P	Y	N	N	P	N	P	N	N	N	N	P
사법(Justice)	Y	P	Y	N	N	P	N	N	N	N	N	N	P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ing)	Y	P	Y	N	Y	P	N	N	N	N	N	N	P
금융시장 (Financial Markets)	Y	P	Y	N	N	P	N	N	Y	N	N	N	P
환경(Environment)	Y	P	Y	N	Y	Y	N	N	N	N	N	N	P
영업허가 및 인가 (Business Permits)	Y	P	Y	N	N	P	N	N	N	P	P	P	P
사회적 사무 (Social Affairs)	Y	P	Y	N	N	P	N	N	N	N	N	N	P
노동법(Labour law)	Y	P	Y	N	P	P	N	N	N	N	N	N	P
노동안전 (Safety at Work)	Y	P	Y	N	N	Y	P	N	N	N	N	N	P
식품안전 (Food Safety)	Y	P	Y	N	N	P	N	N	N	N	N	N	P
내부(Interior)	Y	P	Y	N	N	P	N	N	N	N	N	N	P
보건(Health)	Y	P	Y	N	N	Y	N	N	N	N	N	N	P
가족, 소비자 사무 (Family, Consumer Affairs)	Y	P	Y	N	N	P	N	N	N	N	N	N	P

1) 각 국가의 코드는 ISO 3166-1 alpha-2에 따른 것으로 앞에서부터 NL:네덜란드, CZ:체코, DK:덴마크, DE:독일, SWE:스웨덴, NO:노르웨이, EST:에스토니아, HU:헝가리, POL:폴란드, BE:벨기에, IT:이탈리아, FR:프랑스, UK:영국임

[부록 1]

	NL	CZ	DK	DE	SWE	NO	EST	HU	POL	BE	IT	FR	UK
과학, 기술, 혁신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Y	P	Y	N	N	P	N	N	N	N	N	N	P
문화(Culture)	Y	P	Y	N	N	P	N	N	N	N	N	N	P
물류(Transport)	Y	P	Y	N	N	P	N	N	Y	N	N	N	P

[자료: Differences in Application of the SCM, 2005.7]

Y = 측정됨(Measured)

N = 측정안함(Not measured)

P = 측정계획 혹은 측정 중(Planned to be measured or being measured)

## [부록 2] 규제카드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11-01		규제사무명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51조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 제27조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li> <li>○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함</li> <li>○ 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 등이 유해성 심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판매(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음</li> </ul>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15-02		규제사무명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9조, 제51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li> </ul> </li> <li>○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유통량과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미제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li> </ul>			

[부록 2]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13-02		규제사무명	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25조, 제51조, 제52조		
	시행령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 제54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부지(건축물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승인을 얻어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li> <li>○ 유독물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li> </ul>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12-01		규제사무명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 체방제계획 수립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38조, 제39조, 제40조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4조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제출</li> <li>○ 사고대비물질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li> </ul>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14-01		규제사무명	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24조		
	시행령	null		
	시행규칙	제24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li> </ul>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1-01	규제사무명	환각물질의 흡입·판매 또는 공여금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43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규제내용	환각물질의 소지·흡입, 판매 또는 제공 금지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5-01	규제사무명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소관부처
법적근거	법 률	제22조	
	시행령	제16조,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	
규제내용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최초 및 계속) 및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함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3-01	규제사무명	유독물의 수입신고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6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수출·입 품목 및 수량 등을 신고함. 단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제외한 유독물로 100kg이하인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li> <li>○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이하 ‘협약’) 부속서 III에 규정된 화학물질 및 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학물질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li> </ul>		

[부록 2]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4-01	규제사무명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31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31조	
규제내용	관찰물질의 제조, 수입시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수입예정량, 주요용도 등을 신고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6-01	규제사무명	유독물 표시의무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29조	
	시행령		
	시행규칙	제28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는 유독물의 용기나 포장에 유해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li> <li>- 유독물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등</li> </ul>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8-01	규제사무명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등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33조, 제37조	
	시행령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시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및 변경허가</li> <li>○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함</li> </ul>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2-01	규제사무명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제조금지 등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32조	
	시행령		
	시행규칙		

규제내용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기구 등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국제협약에서 제조·수입·사용이 금지·제한되는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취급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
------	--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9-01	규제사무명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 등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34조, 제36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2조, 제63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46조, 제54조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시행규칙	제34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51조, 제52조	
규제내용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업, 운반, 사용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관련서류 제출 등 실적보고, 관련시설 출입검사,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과징금 처분 요건, 과태료부과기준 등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10-01	규제사무명	유독물영업 등록 및 변경 등록(또는 신고)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제내용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여야 함. 다만,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 가스상유독물을 사용하는 자는 유독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부록 2]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256-007-00	규제사무명	시험기관의 지정 등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동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함</li> <li>○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li> </ul>		

규제등록번호	無	규제사무명	관리기본계획의 지정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4조	
	시행령		
	시행규칙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의 수인의무</li> <li>○ 관리기본계획 준수의무</li> </ul>		

규제등록번호	無	규제사무명	화학물질 배출량 등 조사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17조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함</li> <li>○ 해당내용을 보고하여야 함</li> </ul>		

규제등록번호	無		규제사무명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제40조		
	시행령			
	시행규칙	제38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함</li> <li>○ 사고의 원인,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한 순응의무</li> </ul>			

규제등록번호	無		규제사무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법적근거	법 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6조, 제19조, 제24조		
	시행령			
	시행규칙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4조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개선계획서의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를 해야 함. 이때,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확인해야함</li> <li>○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 결과를 제출해야 함</li> <li>○ 관리대상기기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함</li> </ul>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정책에 해당하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음

## [부록 3] 규제별 정보의무내용의 확인

### [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b>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면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p>	<p>신규화학물질제조자 등의 유해성심사의무</p>
<p><b>제11조 (유해성심사)</b>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또는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12조 (유해성심사 결과 등의 통지)</b>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p><b>제13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b>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치고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규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등을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알린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총칭명)으로 고시한다. 다만, 그 물질이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p><b>제16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b> ① 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나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p><b>제51조 (자료의 보호)</b>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p>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삭제</p> <p>④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2]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제 9 조 (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b>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b>(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b>제출</b>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화학물질</li> <li>2. 유독물</li> <li>3. 관찰물질</li> <li>4. 취급제한·금지물질</li> </ol> <p>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b>자료를 첨부</b>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b>증명을 신청</b>할 수 있다.</p>	<p>화학물질 확인 및 보고</p>

[부록 3]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51조 (자료의 보호)</b>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삭제</p> <p>④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3] 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25조 (유독물관리자)</b> ② 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b>안전 관리 정보</b>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b>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b>하여야 한다.</p>	<p>유독물관리자의 지도·감독의무</p>
<p><b>제52조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b> ① 제25조(제3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②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b>제51조 (자료의 보호)</b>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삭제</p> <p>④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4]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3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b>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p>	<p>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p>

[부록 3]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자체방제계획의 인근 주민에의 사전공고
<b>제40조 (사고의 보고 등)</b>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신고
③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즉시 제2항에 규정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5] 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b>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b>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li> <li>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li> <li>3.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li> <li>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 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li> <li>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6] 환각물질의 흡입·판매 또는 공여금지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43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b>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7]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22조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b>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침하)·균열·부식(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8] 유독물의 수입신고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19조 (유독물의 수입신고)</b> ①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유독물 수입신고</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 수입의 변경신고

[9]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제31조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 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수입예정량, 주요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찰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

[10] 유독물 표시의무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제29조 (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 용기 및 포장, 취급시설, 진열장소에서의 유독물에 관한 표시의무

[부록 3]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1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등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33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취급제한 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p>② 누구든지 <b>취급금지물질을</b> 국내로 수입(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환경부장관의 허가</b>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취급금지물질의 예외적 수입허가
<p>④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b>변경허가</b>를 받아야 한다.</p>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p><b>제37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제한물질의 경우는 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p>	<p>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허가</p>
<p>환경부령으로 정하는 <b>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b>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변경허가</p>
<p>②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li> <li>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 사항</li> <li>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III에 규정된 화학물질</li> <li>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V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li> </ol> <p>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1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제조금지 등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제32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li> <li>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13]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 등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제34조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b>환경부장관의 허가</b>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li> </ol>	<p>취급제한물질영업 허가</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2.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세척)·도장(도장)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② 누구든지 <b>취급금지물질을</b>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급금지물질의 영업허가
③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b> 를 하여야 한다.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p><b>제36조 (허가의 취소 등)</b> ①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li> <li>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각호 생략)</p>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p>	
<p><b>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b>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b>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b>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b>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b>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li> <li>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li> <li>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li> <li>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li> <li>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li> <li>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b>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b></li> <li>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li> <li>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li> <li>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li> <li>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b>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b></li> <li>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li> <li>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li> <li>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li> </ol>	<p>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수인의무</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b>제47조 (행정처분의 기준)</b> 제14조의2·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b>제49조 (과징금 처분)</b>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하거나 감경(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내줄 수 있다.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b>제52조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b> ① 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②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b>제63조 (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li> <li>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li>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li> <li>4.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li> <li>5.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li>6.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li> <li>7.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li> <li>8.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li> <li>9.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li> <li>10.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li> <li>11.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ol>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12.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p> <p>2.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찰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b>제23조 (개선명령)</b>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p><b>제26조 (폐업 등의 신고)</b> 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폐업 및 휴업신고</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27조 (등록의 취소 등)</b>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3. 다른 법령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각호 생략&gt;</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p><b>제46조 (서류의 기록·보존)</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각호 생략&gt;</p> <p>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p>	<p>서류의 기록·보존 의무</p>
<p><b>제54조 (수수료)</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각호 생략&gt;</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14] 유독물영업 등록 및 변경등록(또는 신고)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20조 (유독물영업의 등록)</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b>취급시설을 갖추어</b>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b>환경부장관에게 등록</b>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li> <li>2. 유독물 판매업</li> <li>3. 유독물 보관·저장업</li> <li>4. 유독물 운반업</li> <li>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li> </ol>	유독물영업의 등록
<p>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b>를 하여야 한다.</p>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5]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14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b>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p>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의 기준과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의2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b>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li> <li>2.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li> <li>3.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li> <li>4.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li> <li>5.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li> </ol> <p>③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에</p>	<p>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p>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에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li> <li>2.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li> </ol> <p>④ 제2항에 따라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16]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수립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 6 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b>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li> <li>2.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li> <li>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li> <li>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li> <li>5.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li> <li>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수립 관련 자료제출</p>

[17] 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b>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기관별 조사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보고의무 (조사 및 감사 &amp; 보고)</p>
<p><b>시행규칙 제12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b></p> <p>① 지방환경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대상 화학물질</li> <li>2. 조사대상 업종, 업체의 규모 및 지역</li> <li>3. 조사방법</li> <li>4.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li> <li>5. 조사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ol>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p> <p>③ 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른다.</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p>	
<p><b>환경부고시 제2008-1호 제 6 조(조사방법)</b>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는 배출량조사 지침에 의하여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조사표 또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매체로 작성·제출하거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p>	

[규제18] 유해화학물질사고 보고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p><b>제40조 (사고의 보고 등)</b>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p>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보고
<p><b>시행규칙 제38조 (사고의 보고)</b>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b>별지 제39호서식</b>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부록 3]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	----------

[규제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조 문	정보의무의 분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정보의무 해당사항 없음

## [부록 4] 자료요구의 확인: 정보의무 보기카드

정보의무 1-1	신규화학물질제조자 등의 유해 성심사의무	정보의무유형	조사 및 감사, 보고
작성주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10조, 제11조 /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 제27조 /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정보의무내용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 관의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함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으려면 면제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함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화 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자료제출을 요청 또는 명령받을 수 있음		
자료요구	(1) 유해성 심사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주요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첨부2. 급성독성시험성적서 -첨부3.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첨부4. 분해성 시험성적서 -첨부5.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첨부6.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첨부7.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첨부8.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첨부9.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첨부10.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첨부11.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 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첨부12.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2) 유해성 심사 면제신청		

[부록 4]

	<p>-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p> <p>-첨부 1. 성분명세서</p> <p>-첨부 2. 사용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첨부 3. 고분자화합물의 성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자료</p> <p>(3) 자료제출 요구 또는 명령시</p> <p>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급 및 보관 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li> <li>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li> <li>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자료((1) 유해성 심사 신청에서의 첨부1~첨부10)</li> </ol>
--	---

정보의무 2-1	화학물질 확인의무	정보의무유형	조사 및 감사, 보고
작성주체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9조 / 시행령 제27조 /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정보의무내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화학물질이 신규 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자료요구	<p>(1)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제출(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p> <p>-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p> <p>(2)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p> <p>-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p>		

정보의무 3-1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승인	정보의무유형	인가신청
작성주체	유독물영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25조, 제30조 <sup>1)</sup> / 시행규칙 제29조
정보의무내용	-유독물 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공동활용계획서 -첨부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첨부3.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첨부4. 개별업소 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첨부5.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정보의무 3-2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 변경승인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유독물영업자	대 상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25조, 제30조 / 시행규칙 제30조		
정보의무내용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정보의무 3-3	유독물관리자의 지도감독의무	정보의무유형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작성주체	유독물관리자	대 상	유독물 취급종사자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1)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목록에서 “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에 해당하는 법률을 제25조, 제51조, 제52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30조가 누락된 것으로 사료됨.

[부록 4]

근거법규	법률 제25조
정보의무내용	-유독물 취급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자료요구	-유독물 취급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정보

정보의무 4-1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정보의무유형	보고
작성주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9조 제1항, 제2항 / 시행령 제2조 내지 제24조 /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		
정보의무내용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요구	[자체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방제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疏散計劃)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보의무 4-2	자체방제계획의 인근주민에의 사전공고	정보의무유형	제3자에의 정보제공
작성주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대 상	인근주민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9조 제3항 / 시행령 제2조 내지 제24조 / 시행규칙 제37조 제6항		
정보의무내용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인근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함
자료요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하는 사항]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정보의무 4-3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신고	정보의무유형	신고의무
작성주체	유해화학물질취급자	대 상	관할기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40조 제2항 / 시행령 제2조 내지 제24조 / 시행규칙 제38조		
정보의무내용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자료요구			

정보의무 5-1	유독물 수입신고	정보의무유형	신고의무
작성주체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19조 제1항 / 시행령 제14조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정보의무내용	-유독물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		

[부록 4]

정보의무 5-2	유독물 수입의 변경신고	정보의무유형	신고의무
작성주체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19조 제2항 / 시행령 제14조 /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정보의무내용	-동조1항의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 -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신고확인증원본		

정보의무 6-1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정보의무유형	신고의무
작성주체	제조사 또는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1조 제1항 / 시행령 제18조 /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정보의무내용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관찰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		

정보의무 6-2	관찰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	정보의무유형	신고의무
작성주체	제조사 또는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1조 제2항 / 시행령 제18조 /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정보의무내용	-동조1항의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 -첨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신고확인증 원본
------	---

정보의무 7-1	유독물 용기 및 포장, 취급시설, 진열장소에의 유독물에 관한 표시의무	정보의무유형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작성주체	유독물영업자 및 수입자	대 상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29조 / 시행규칙 제28조		
정보의무내용	-유독물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 진열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자료요구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명칭: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정보의무 8-1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정보의무내용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		

[부록 4]

정보의무 8-2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3조 제2항 /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정보의무내용	-취급금지물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환경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자료요구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		

정보의무 8-3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변경 허가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수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3조 제4항 /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정보의무내용	-제1항 본문 및 제2항 단서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허가증 원본		

정보의무 8-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허가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수출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문 /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정보의무내용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수출통보서 -첨부2.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3. 수출자책임보증서

정보의무 8-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변경 허가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수출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문 /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정보의무내용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수출승인서 원본		

정보의무 9-1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영업을 하려는 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4조 제1항 /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제1항		
정보의무내용	-취급제한물질로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		

[부록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부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li> <li>-첨부2.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명세서</li> <li>-첨부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첨부한다.</li> <li>-첨부4. 취급제한물질의 용도</li> </ul>
--	---

정보의무 9-2	취급금지물질 영업허가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대 상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4조 제2항 /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제1항		
정보의무내용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음		
자료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li> <li>-첨부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li> <li>-첨부2.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명세서</li> <li>-첨부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첨부한다.</li> <li>-첨부4. 취급제한물질의 용도</li> </ul>		

--	--	--	--

정보의무 9-3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변경허가 또는 신고	정보의무유형	인허가신청
작성주체		대 상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34조 제3항 /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제4항		
정보의무내용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자료요구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허가증 원본		

정보의무 9-4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의무	정보의무유형	보고
작성주체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대 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45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1조		
정보의무내용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에 따라 법이 정한 자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이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채취 및 관련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41조와 결합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에게는 연간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됨		
자료요구	-별지 제40호 서식의 연간실적보고서		

[부록 4]

정보의무 9-5	폐업 및 휴업신고	정보의무유형	신고의무
작성주체	유독물 영업자	대 상	시도지사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26조 제1항 /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 시행규칙 제26조		
정보의무내용	-유독물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단,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자료요구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 -첨부1. 등록증 원본 -첨부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		

정보의무 9-6	서류의 기록, 보존의무	정보의무유형	서류비치 및 갱신
작성주체	법이 정한 자	대 상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항 / 시행규칙 제44조		
정보의무내용	-법이 정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전산입력자료로 해당서류를 갈음하여 보존가능		
자료요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서류]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		

정보의무 10-1	유독물 영업의 등록	정보의무유형	등록의무
작성주체	유독물 영업(희망)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20조 제1항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18조
정보의무내용	-유독물로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자료요구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첨부1.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첨부2.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첨부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 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 -첨부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첨부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정보의무 10-2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정보의무유형	신고의무
작성주체	유독물영업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20조 제2항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19조		
정보의무내용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자료요구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첨부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부록 4]

정보의무 11-1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수립 관련 자료제출	정보의무유형	보고
작성주체	유해화학물질취급자	대 상	관할기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6조		
정보의무내용	-환경부장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수립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제출의무가 부여될 개연성이 높음		
자료요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 및 유해화 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정보의무 12-1	유해화학물질배출량	정보의무유형	보고
작성주체	유해화학물질취급자	대 상	환경부장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17조 / 시행규칙 제12조		
정보의무내용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해 조사, 보고해야하는 의무		
자료요구	-배출량조사표(고시 제2004-178호)		

정보의무 13-1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보고	정보의무유형	보고
작성주체	유해화학물질취급자	대 상	관할기관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근거법규	법률 제40조 제2항 / 시행령 제2조 내지 제24조 / 시행규칙 제38조		
정보의무내용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자료요구	-사고개요, 피해상황, 수습현황 등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는 바 해당 내용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 정보제공이 요 구될 것임을 알 수 있음		

## [부록 5] 화학물질배출량 조사표

- 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의 경우 기업체는 **배출량조사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환경부고시 제2008-1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별지서식에서 배출량·이동량 조사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재는 전산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

(2008)년도 화학물질 환경배출량·이동량 조사표(제7조 관련)  
 ※ 예 : 2007년 한 해 동안의 배출량·이동량을 조사하여 2008년에 제출할 경우 2007년을 기입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사업장소재지	□□□-□□□			
(4)	관할기관	□□□□	(5)	사업자등록번호	□□□-□□-□□□□□□
(6)	업종 (표준산업분류)	□□□□□□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7)	종업원수	명
(8)	산업단지명	□□□□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9)	농공단지명	□□□□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10)	자 본 금	백만원	(11)	연간매출액	백만원
(12)	연간조업일수	일	(13)	일평균조업시간	시간

[부록 5]

(14)	유독물 영업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유독물	(15)	TM좌표	가로□□□.□ 세로□□□.□		
(16)	상수원 보호구역명		(17)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팔당 I 권역 <input type="checkbox"/> 팔당 II 권역 <input type="checkbox"/> 대청 I 권역 <input type="checkbox"/> 대청 II 권역			
(18)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명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울산,미포,온산국가산 업단지 <input type="checkbox"/> 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	(19)	유입수계명	□□□□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20)	사업장내 폐수처리시설 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21)사업장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22)	사업장 규모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배출량			
		종	종	톤/년			
<b>“본 조사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相違)없음을 확인합니다.”</b>							
(23)	결 제	근무부서 (전화번호)	담당자휴대폰 (e-mail)	직 위	성 명	서 명	서명일자
	작성자						
	확인자						

※ (15)~(19)담당공무원이 기재

2.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 (※조사대상화학물질 수 만큼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1) 조사대상화학물질	가. 화학물질명			나. 화학물질 CAS번호			
	라. 취급량 및 용도			다. 사업장내 최대 보관량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2) 조사대상화학물질환경배출량	①생산량 (톤/년)		②사용량 (톤/년)		③용도		
	가. 대기배출량		①점오염원을 통한 대기배출량 (kg/년)		②점오염원 배출량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나. 수계배출량		③비산오염원을 통한 대기배출량 (kg/년)		④비산오염원 배출량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다. 토양배출량		(kg/년)		①수계 배출량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3) 조사대상화학물질이동량 (※추가되는 폐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다면 “서식 2”를 복사하여 기재)	가. 폐수 처리업체로 이동량 (kg/년)	나. 이동량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다.	①폐수처리업체명	라. 폐수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②처리업체하기번호	마. 폐수처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③업체주소	바. 폐수처리업체로 보낸 폐수 이동량	톤/년
					①폐수처리업체명	사. 폐수에 포함된 조사대상화학물질 이동량	kg/년
					②처리업체하기번호	라. 폐수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③업체주소	마. 폐수처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아.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동량 (kg/년)	자. 이동량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차.	①폐기물처리업체명	카. 폐기물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②처리업체하기번호	타. 폐기물처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③업체주소	파.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낸 폐기물 이동량	kg/년
					①폐기물처리업체명	하.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화학물질 이동량	kg/년
					②처리업체하기번호	카. 폐기물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③업체주소	타. 폐기물처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가. 자가매립량 (관리형 및 차단형) (kg/년)			①자가 매립량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기입)		
(4) 조사대상화학물질배출량 감소 활동	가. 환경배출량	①전년도 환경배출총량 (kg/년)		②전년도 환경배출량(kg/취급량(톤))		③조사년도 환경배출량 (kg/톤)	
		④조사년도 환경배출량(kg/취급량(톤))		kg/톤		kg/톤	
	나. 이동량	①전년도 이동량 (kg/년)		②전년도 이동량(kg/취급량(톤))		③조사년도 이동량 (kg/톤)	
		④조사년도 이동량(kg/취급량(톤))		kg/톤		kg/톤	
다. 배출량 감소활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작성안내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코드번호로 모두 기입)				다. 주요 배출량 감소내역	
						다. 배출량 감소활동내역을 간단하게 서술	

※ (2)조사대상 화학물질 환경 이동량란의 가. 자가매립량은 관리형 및 차단형 매립시설에서의 매립량을 말한다.

## [부록 6] 업종별 조사사업장 현황

업 종	사업장 (개소)	화학 물질 (종)	업 종	사업장 (개소)	화학 물질 (종)
<b>총계(33업종)</b>	<b>3,012</b>	<b>219</b>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39	21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	12
제1차 금속산업	298	6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0	1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8	5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	25
섬유제품 제조업	260	3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6	5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3	6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5	1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6	57	기타 서비스업	9	6
음·식료품 제조업	212	29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5	4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5	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21	4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4	1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8	34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3	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82	44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	23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63	70	전문직별 공사업	3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8	27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6
수도사업	55	1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	3
전기, 가스 및 증기업	53	14	담배 제조업	1	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0	21	수리업	1	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7	28	-	-	-

## [부록 7]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제 효율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법령에 따른 행정 간소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부담 시범측정조사를 담당한 한국행정연구원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정부가 법령에 근거한 기업의 각종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의 비용을 측정 및 조사하여 행정부담 감축이 필요한 분야 및 목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응답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통계법 제13조 및 14조에 의거 관리되며, 통계적으로 집합 처리되기에 귀하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단장 이종한/연구원 이동규·박신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01 서울상록회관 8층  
 조사담당자 Tel 2007-0544/E-mail:schema209@naver.com

### 본 설문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요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배출량 조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이러한 <배출량 조사>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 내용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주요 내용	사업자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토록 하여 원료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의무 사항	<input type="checkbox"/>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6개 업종</li> </ul> </li> <li>○ 대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 사업장</li> </ul> </li> <li>○ 대상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 관찰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 388종 화학물질</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제조·사용)량</li> <li>○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li> <li>○ 폐기물·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화학물질 양</li> </ul>	
	규제명	<b>화학물질배출량조사</b>
	정보 의무	<p><b>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b>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로써,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이에 근거해 일정범위의 기업에 대해 화학물질배출량조사표를 <b>작성</b>하여 <b>제출</b>하도록 함</p>
자료 요구	<p>조사대상 화학물질, 조사대상 업종, 업체의 규모 및 지역, 조사방법,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b>배출량조사표</b></p>	

## I. 기업분류

문1.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 보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 >

- (1) 농업 (2) 임업 (3) 어업 (4) 광업
- (5) 제조업 (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7) 건설업
- (8) 도매업 (9) 소매업
- (10) 숙박업 (11) 음식점업
- (12) 운수업 (13) 통신업
- (14) 금융업 (15) 보험업 (16) 부동산 및 임대업
- (17) 사업서비스업 (18)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업 (19) 교육서비스업
- (20) 보건업 (21) 사회복지업 (2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23) 개인서비스업 (24) 가사서비스업
- (25) 국제 및 외국기관 (26) 기타

문2. 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상시근로자) 수는?

- ① 10명 미만 ② 10명-30명 미만 ③ 30-50명 미만 ④ 50-100명 미만
- ⑤ 100-200명 미만 ⑥ 200-300명 미만 ⑦ 300명 이상

문3. 2007년 귀사의 연간 매출액 규모(수출포함)는?

- (                      천만원)(천만원 이하 절사)

## II. 가격변수 도출(1): 내부비용

문4. 해당 의무를 연평균 몇 회 이행 하였습니까?(최근 3년간 평균)

- ① 없음, 그러나, 최근 3년 이전에 이행한 적은 있음 ② 1회-5회  
 ③ 6회-10회 ④ 11회-20회 ⑤ 20회 초과

문5. 다음은 해당 정보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귀사의 내부활동 들로서 그 중 일부만 해당 될 것입니다. 귀사에게 해당되는 내용 들만 골라 담당하는자(연봉포함), 소요시간(h)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본 설문 문항이 정보의무 부담 측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 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자 보기 >

- (1) 기업대표 및 임원 (2) 중간 관리자 (3) 공장관리자(공장장, 반장 등)  
 (4) 외부전문직(기술직,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5) 일반 사무종사자(총무, 경리 담당 등) (6) 생산직 종사자 (7) 기타

구 분	활동내역		A	B	C
	표준행정활동	측정을 위한 행정활동	담당자	담당자 평균연봉 (만원)	시간(h)
①	정보제공의무 숙지	정보제공의무 숙지			
	법정요구사항에 대한 훈련				
②	정보 검색	관련정보와 수취 수 집과 평가			
	평 가				

구 분	활동내역		A	B	C
	표준행정활동	측정을 위한 행정활동	담당자	담당자 평균연봉 (만원)	시간(h)
③	계 산	수치의 준비(계산과 보고, 검토와 수정 을 포함)			
	수치의 제시				
	검 토				
	수 정				
④	기재사항의 작성	보고(기술, 복사, 파 일링, 배포, 자료제출)			
	복사,배분,서류정리 등				
	정보의 보고와 제출				
⑤	정산/지불 등	비용지불 및 결제			
⑥	내부회의	내부회의 개최(회의 주관자만을 기준으 로 기재)			
	외부회의				
⑦	정부당국에 의한 감사(감찰)	조사(감사인 주관 회 의참석, 감사 수검 준비 및 이행, 시정 조치 결과보고 등)			
	정부당국에 의한 감사 결과로부터의 시정				
⑧	기타( )				
합 계					

- 주: 1) 각 해당 내역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발생 건의 연 평균을 의미함  
 2) 담당자(A)는 해당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자를 <담당자 보기>에서 골라 기재함  
 3) ① ~ ⑦ 까지의 각각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만 기입해야 함

문6. 위 번 문항의 ⑥번 내부회의 개최시 회의개최준비자를 제외한 회의참석자를 다음<담당자 보기>에서 골라 기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연봉, 시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보기 >

(1) 기업대표 및 임원 (2) 중간 관리자 (3) 공장관리자(공장장, 반장 등)  
 (4) 외부전문직(기술직,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5) 일반  
 사무종사자(총무, 경리 담당 등) (6) 생산직 종사자 (7) 기타

참석자 직위 (보기에서 선택 혹은 직접 기입)	A	B
	참석자 평균연봉(만원)	시간(h)

주: 참석자는 회의개최를 준비하거나 주관하는 주요담당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단순 참석자를 의미함

Ⅲ.

**가격변수 도출(2): 외부비용**

문7. 귀사는 해당 정보의무의 직접적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으실 경우, 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다음 해당되는 내역에 비용을 기입하시고 총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내용 중 해당사항별로 모두 기술 바랍니다.)

번호 (해당항목에 체크)	①	②	③	④	⑤
해당항목	우편비	인쇄비	기계	소프트 웨어	기타(설비)
소요비용	( )원	( )원	( )원	( )원	( )원
연평균 총 소요금액 합계	( )원				

**문8.** 귀사는 해당 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용역을 의뢰합니까? 있다면 해당란에 기입해주시시오. (오직 본 의무이행만을 위한 외부전문용역을 일컬으며, 연 평균 기준임)

연간 용역의뢰 횟수	( )회	1회당 평균 소요비용	( )원
------------	------	-------------	------

**문9.** 귀사는 한사람의 직원을 고용하여 근무시키는데 있어 급여 외에 간접비용(4대 보험, 복리후생비, 사무집기, 사무공간 등)이 직접 급여의 몇 %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 ①10% ②20% ③25% ④30% ⑤40% ⑥ 50% ⑦ 50% 초과

**문10.** 귀사는 정부로부터 해당 정보의무 부과가 없어지더라도 기업 내부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수집, 정리, 정보 공유, 경영 등에 계속 활용할 것입니까?

척도	①	②	③	④	⑤	⑥
의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름/의견없음

## IV. 의견 및 건의사항

**문11.** 본 정보의무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 ① 우리회사의 특성 및 업무와는 무관한 정보의무이다.
- ② 법령과 요구사항이 중복된다.
- ③ 용어가 어렵다.
- ④ 용어에 일관성이 없다.
- ⑤ 정보의무 요구 횟수가 너무 잦다.
- ⑥ 직접 자료제출로 인해 시간과 인력소모가 크다.
- ⑦ 이해당사자를 위한 규정/내용 안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없다.
-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⑨ 해당사항 없음.

**문12.** 귀사는 정부가 정보의무로 인한 기업의 비용을 국가 전체적으로 측정한 뒤,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①	②	③	④	⑤	⑨
의미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모름/의견 없음

**문13.** 본 의무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부담 간소화 방안은 무엇입니까?(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 ① 우리회사와 본 정보의무는 맞지 않으므로 철폐해야 한다.
- ② 특정 기업에게는 정보제공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 ③ 보조법령 및 요구사항을 통합해야 한다.
- ④ 용어를 쉽게 수정해야 한다.
- ⑤ 인터넷 자료제출 및 업무담당자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필요
- ⑥ 정부 인터넷 시스템 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료부담 경감
- ⑦ 서류제출 횟수를 줄여야 한다.
-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문14.** 본 정부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